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일시** 2026. 7. 9.(목), 14:00~17: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가교육위원회  YouTube 생중계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1. 개요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2.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이동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14:00~14:10 (10)	개회사	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발제		
14:10~14:30 (20)	현황보고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 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14:30~15:00 (30)	기조발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 : 장덕호(건국대학교 교수)
15:00~15:10 (10)	휴식	
토론		
좌장: 김성열(경남대학교 명예석좌교수, 前한국교육학회장)		
15:10~16:40 (90)	지정토론	[지정토론 1] 조재범(풍덕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지정토론 2] 전은영(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3] 장세린(금구초등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4] 김은혜(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5] 이수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지정토론 6] 최종선(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지정토론 7]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지정토론 8] 김영식(덕양중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9]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16:40~17:00 (2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폐회



# 목차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개회사 .....	04
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	07
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발제

현황보고.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	09
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기조발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 .....	27
장덕호(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

- [지정토론 1] 조재범(풍덕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2] 전은영(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3] 장세린(금구초등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4] 김은혜(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5] 이수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지정토론 6] 최종선(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 [지정토론 7]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 [지정토론 8] 김영식(덕양중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9]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오늘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님 및 직원분들과  
발제, 토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  
교사가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일로  
고소를 당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며 이는 모든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교권 확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 조건인  
최소한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권은, 교원에게 교단에 설 자격을 부여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권 확립의 문제가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책들의 타당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이 실패한 것은 없는지,  
솔직하고 냉철하게 의견교환을 해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학교 현장 상황이 궤도를 많이 이탈해 있고,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 우리의 지적 게으름과 약간씩의 비겁함이

만든 문제일 것이므로,

그 해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는 대한민국 어디엔가 있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아침 조용한 시간에 발제 글들을 살펴서 읽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실태와 그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할만한 정책들을,

궁금했던 통계자료들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지혜가

보다 깊이 검토된 상태로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작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규범력을 가지는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보다 종합적인 일이라

누군가가 차고 앉아서 구슬을 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과 같은

정책과 행정 당국자들의 업무 단계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최선을 다해 협업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히딩크 시절의 한국축구팀처럼

공격수들이 문전을 쇄도할 때,

이전의 선후배 의식 같은 낯은 것을 버리고 수평적 관계가 되어

짧고 큰 외침으로 빠르게 신호를 보내며 골을 넣었듯이

오직 하나의 목표하에 소통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주 단위,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일하며 집중해야

복잡한 정책 지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

입법 권한을 가진 분들과 미리 목표를 공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해나간다면,  
2년 내에 현장에서 먼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할 정도가 되고,  
통계에 잡히고,  
약 5년 내에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단 하나의 획기적 정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책을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어  
순차적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계단식으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국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련 연구자들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약 3년 뒤에도 똑같다, 학교 현장의 고통은 그대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수행하는 공직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스스로 아프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마칠 때, 학교 교실을 생각하며  
각자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협업을 할 것인지,  
하나씩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것이 포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가한 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각론 중 학교공동체 회복과  
교원 양성 등 부분에 포럼에서 얻은 지혜를 담고,  
당장 정책화할 것은 교육부, 교육청들과 여러 경로로  
협의를 나설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가 몇 년 뒤에,  
사랑과 존경, 우정의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는,  
설레는 비전을 품고  
의논하고 협력하며, 함께 뜻 모아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가교육위원장 차 정 인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고영선입니다.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과 학계에서 우리 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 기술 발전,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가진 학생의 증가 등 도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을 꼽으라면 교육공동체의 공동체 문화 쇠퇴, 그리고 구성원 간 신뢰의 하락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육공동체는 아직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지 않은 경우에 구성원 간 신뢰 약화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그 어떤 건강한 교육도, 미래 세대의 행복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짚어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보다 실천적인 개선 방향을 치열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의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과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정책과 대안이라도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온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공감대를 넓혀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많은 분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의 해안이 담긴 개회사로 이번 포럼의 문을 열어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경남대학교 김성열 교수님을 비롯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절박한 과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어려운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 건국대학교 장덕호 교수님,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아홉 분의 지정토론자 여러분의 귀한 참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빈틈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주시는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이 우리 교육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9일  
한국교육개발원장 **고영선**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발제

01

## 현황보고

###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 CONTENTS

I	II	III	IV	V
들어가는 말	교육활동 침해 실태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정책 대응 현황 및 과제	나가는 말



01. 들어가는 말

## 가.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회복'

### 1) '교육활동 침해'

[교원지위법 제19조]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범죄행위와 부당한 간섭 및 제한

### 2) '교권' (KEDI, 2025)

#### 권위

Authority

학생·학부모가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영향력



#### 권리

Right

전문성에 근거해 교육 내용·방법·평가 등을 판단하고 교육하는 결정권과 자율성



#### 권한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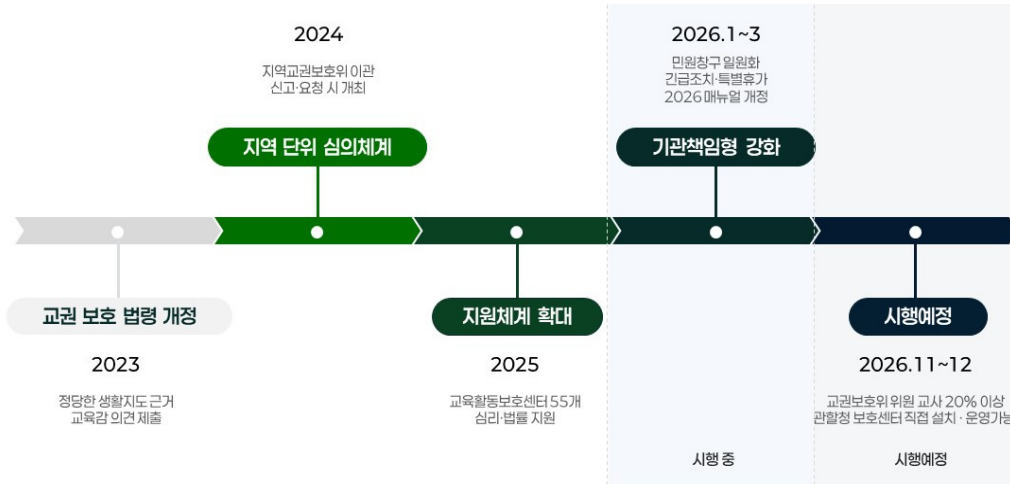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법과 제도가 부여한 자격과 책임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상 공식심의 사안뿐 아니라, **공동체의 약화, 전문성·교육적 판단의 위축, 조직 지원 체계**까지 관심 필요
- 권한은 법률만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권위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 학생·학부모의 신뢰, 학교와 교육행정의 지원이 결합될 때 형성
-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정당하게 발휘될 기반을 구축**, 즉 '교권'의 의미와 방향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음.

01. 들어가는 말

## 나. 최근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기관 책임 대응체제 구축 경과



01. 들어가는 말

## 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확대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법적 권한과 지원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인력·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

**법적 기반 : 교권보호 5법**

- 교원의 교육·생활지도 권한을 법률에 명시
- 보호자의 전문적 판단 존중·협력 의무 신설
-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 원칙 반영
- 교육감 의견 제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피해교원 분리·상담·치료 법률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b>83개</b> (26.5. 기준)	교육활동보호센터 (2023년 25개)
<b>369명</b> (26.2. 기준)	상주 인력 (2023년 131명)
<b>222,245건</b> (25.2학기 기준)	센터 이용 (2022년 25,308건)

2025년 2월 기준 학교현장 인프라 설치 현황(교육부, 2026)



01. 들어가는 말 : 발제 초점

## 라.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 아동학대처벌법

2023년 제기된 문제 (황준성, 2023)

- '법률의 모호성'  
: 정서적 학대행위 기준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계 불명확
- '절차적 문제'  
: 소명 전에 수업 배제·담임 박탈·직위해제 등 불이익 가능
- '부담의 비대칭'  
: 학대 미확인 시에도 조사·신분상 부담은 교원에게 집중

이후 법적 보완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3호)
-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조사·수사기관의 참고 의무화
- 신고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제한

71%

교육감 의견제출 중  
'정당한 생활지도'  
(1,439건 중 1,023건)

60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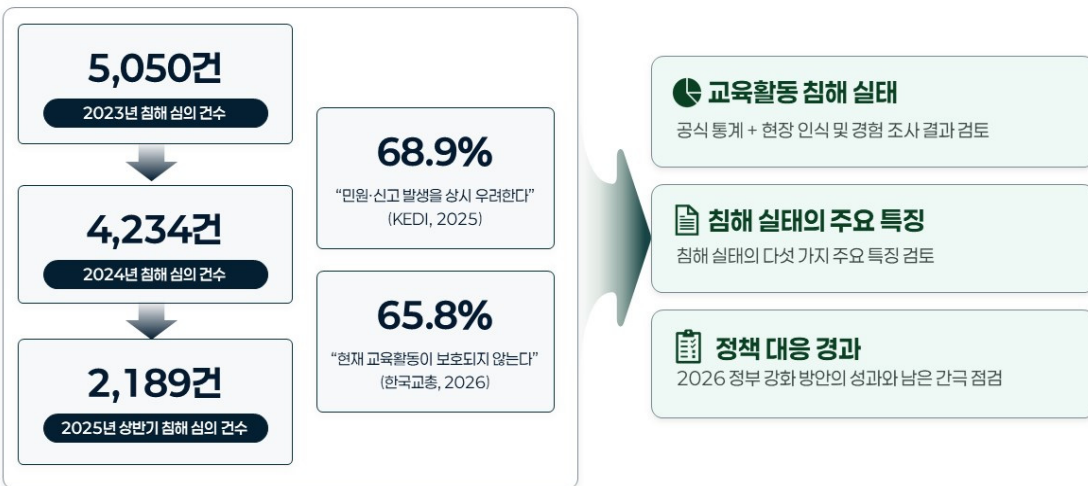
수사 개시 전  
종류·불기소로 종결  
(정당한 생활지도 674건 중)

852건

보건복지부 통계 결과  
2023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  
(전년 1,702건 대비 절반수준)

01. 들어가는 말 : 발제 초점

## 마. 제도와 지원의 지속적인 강화, 학교 현장도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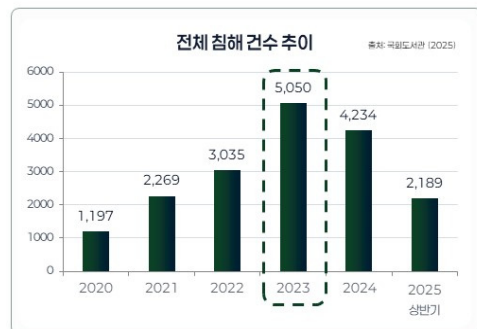
# 02

## 교육활동 침해 실태

###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 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추이 (2020~2025년 상반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연도	전체	학생	보호자 등
2020	1,197	1,081	116
2021	2,269	2,098	171
2022	3,035	2,833	202
2023	5,050	4,697	353
2024	4,234	3,773	461
2025 (상반기)	2,189	2,000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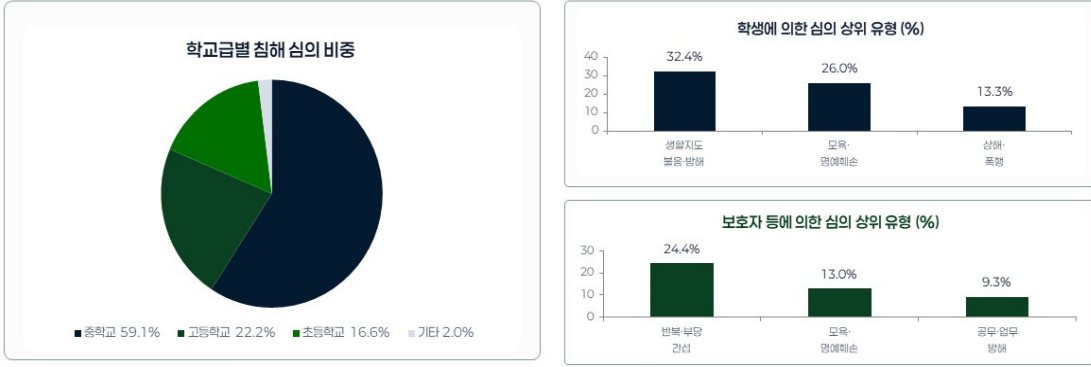


2023년 최고치 이후 2024년 감소, 그러나 2025년 상반기만 2천 건 이상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2020년 116건 → 2024년 461건으로 4배 증가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나. 교육활동 침해 심의 유형 (2024학년도)

전체 4,234건 중 3,925건(약 92.7%)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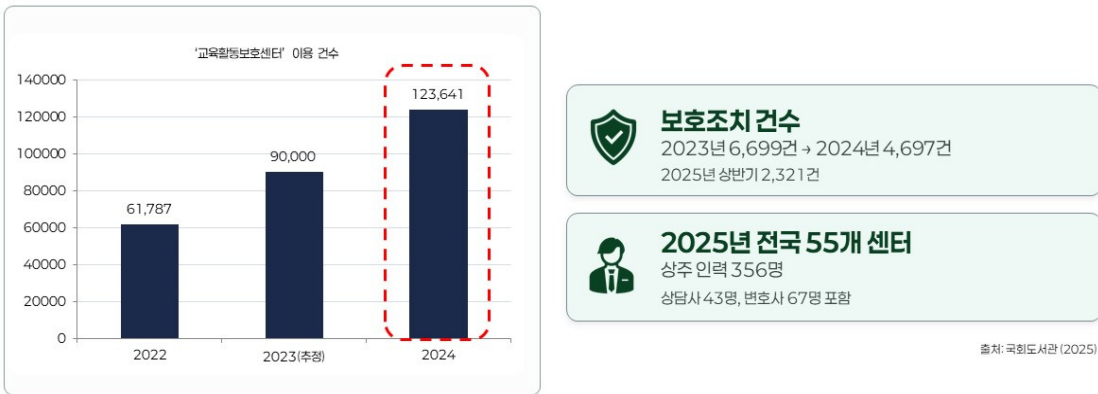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2023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설 뒤에 ‘침해 심의 유형’의 특성 변화  
 - 2023년 대비 ‘모욕-명예훼손’ 비율 축소(44.8→26%),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방해’ 비율 증가(24.1→32.4%)

출처: 교육부의(2025),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결과」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및 지원체계



- ‘센터 이용’ 증가는 지원체계 확충과 현장 수요를 동시에 확인 가능  
 -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상주 인력 확대 등의 대응 체계가 제도적-지속적으로 강화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 라.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 2024학년도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어 '조치 없음' 비율 감소 (49% → 8.5%)
- '교원에 대한 보호 및 후속 조치' 강화와 함께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 강화 노력 지속

출처: 교육부 외(2025),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 마. '교원보호5법' 이후 교육활동 침해 인식 및 경험

전국의 교원 8,604명 대상 인식조사 (조사기간: 2025년 9~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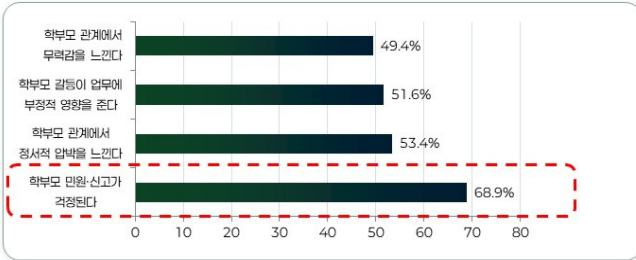
출처: 김지선·전제성(2026), 「교원보호 5법에 관한 교원 인식 분석」

**지원 요구 1순위** 법률컨설팅·소송 무료상담(3.77점) > 보복성·허위 아동학대 신고 처벌 강화(3.76점)  
 > 반 교체·전학, 배상·중재, 치유·심리상담(각 3.70점)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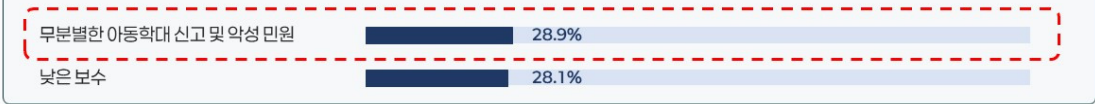
## 바. 민원에 대한 '일상적 부담과 정서적 압박' 경험

전국 초등학교 수업담당 교사 5,578명 대상 조사 결과, 절반 정도의 교사가 일상적으로 높은 부담을 가짐(KEDI, 2025)



**70% 이상**  
 경력 15년 이하 모든 집단의 민원·신고 우려 비율  
 (16년 이상 집단도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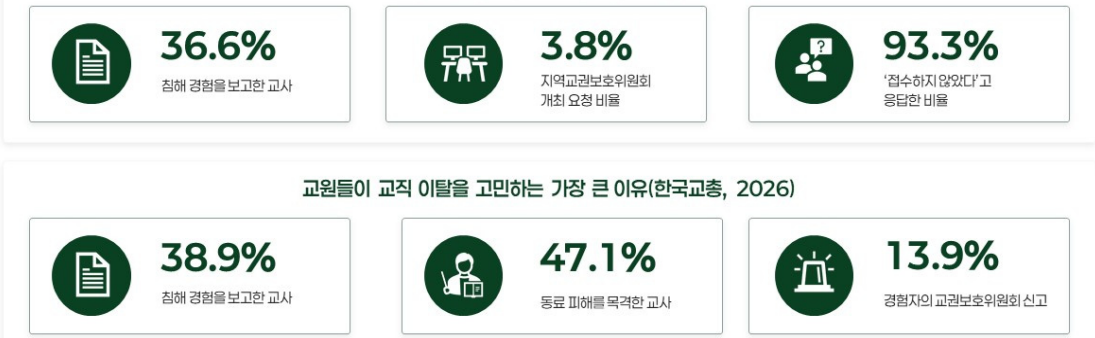
교원들이 교직 이탈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한국교총, 2026)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 사. 신고되지 않은 '잠재적 침해' 경험(1):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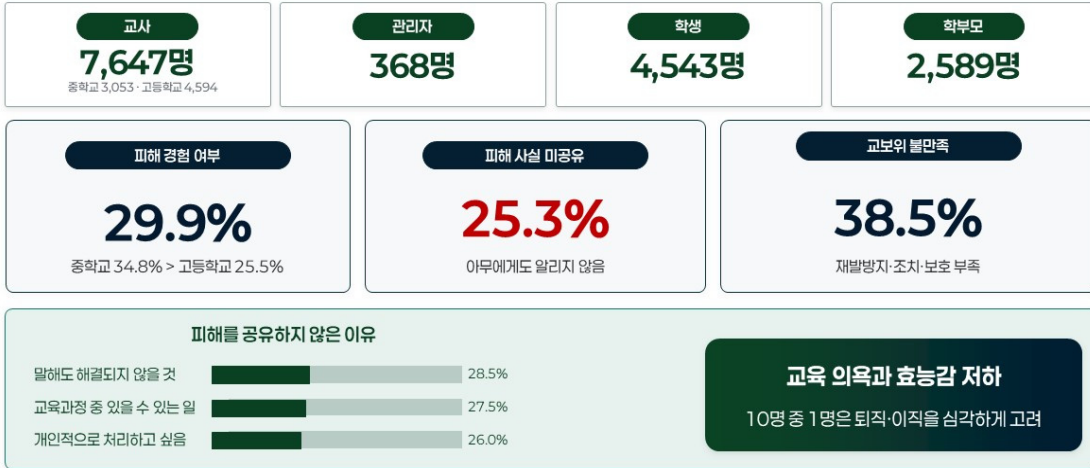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2025) : 3,559명 교원 대상



공식 건수의 감소만으로 현장의 실제적 부담이 사라졌다거나 크게 줄었다 보기는 어려움

02. 교육활동 침해 실태

아. 신고되지 않은 '잠재적 침해' 경험(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5)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 가. 침해 실태의 5가지 주요 특징

- 01

**사건화 이전의 위축과 불안**

신고·조사 절차 자체가 생활지도 유보와 자기검열을 낳음


- 02

**갈등 책임의 개인화**

보고 이후에도 조직적 조치가 없으면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남음


- 03

**복합적 학생 지원 수요에 대한 지원체계 불일치**

ADHD·경계선 지능 등 지원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협력체계 부족


- 04

**학교 조직문화 및 업무구조와의 연계성**

관리자 리더십과 협력적 조직문화가 제도 실행의 핵심


- 05

**권리 대립 프레임을 넘어 신뢰 회복 논의로의 확대**

교사대 학생·학부모 등의 구성원간 대립 구도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낮음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 나.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1): ‘사건화 이전의 위축과 불안’

“최종 처분과 별개로 신고·조사 절차 자체만으로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적 판단·실행이 위축된다.”

<p><b>71%</b></p> <p>교육감 의견 중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1,439건 중 1,023건)</p>	<p><b>36.6% → 3.8%</b></p> <p>침해 경험 응답 대비 위원회 개최 요청 비율 (교사노조연맹, 2025)</p>	<p><b>25.3%</b></p> <p>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중등교사 비율 (한국형사범무정책연구원, 2025)</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6f2e6; margin-bottom: 5px;"><b>언론 보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 <b>한국일보(2026.6.17.)</b></p> <p>“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접수 순간 교사의 일상은 멈춘다.” 제도가 정비됐지만, 신고를 받는 대상이 학교, 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p> </li> <li> <p>✓ <b>주간경향(2026.5.15.)</b></p> <p>사직을 고민한 결정적 요인 1위는 악성 민원(68.1%), 이통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호한 법 적용 기준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다.</p>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3366; color: white; margin-bottom: 5px;"><b>연구결과 및 보고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 <b>국교위 특별위원회(2024)</b></p> <p>교사가 민원 신고를 우려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주저하는 상황은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조건</p> </li> <li> <p>✓ <b>안지혜 외(2025)</b></p> <p>일상적 수업 방해와 민원·이동학대 신고 가능성이 생활지도 유보와 자기검열로 연결 및 공식 사건 이전부터 교사의 전문적 판단 위축</p> </li> </ul>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 다.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2): '갈등-책임의 개인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와 위기학생 지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p><b>40.4%</b></p> <p>피해를 보고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p>	<p><b>38.5%</b></p> <p>교관보호위원회 경험자 중 결간에 불안속한 비율</p>	<p><b>서류상으로만 존재</b></p> <p>학교장 책임인원대립이 서류상으로만 존재 관리자의 책임 이전, 교사 탓으로 전락, 결정회피가 갈등 증폭 (국교위 특별위원회, 2024)</p>
<p><b>언론 보도</b></p>	<p><b>연구결과 및 보고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울산매일 (2026.1.22)</b></li> </ul> <p>“정부는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틈을 누가 구성·운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p> <p>“인력·예산 지원 없이 '학교 자율'로 떠넘겨지면 결국 평교사가 다시 민원 응대에 차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승호·이고은 (2024)</b></li> </ul> <p>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피해 교원이 사안 서류와 보호자 연락을 직접 처리, 보호보다 행정절차의 일부로 인식</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지혜 외(2025)</b></li> </ul> <p>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 역고소 우려, 관리자 책임 회피가 대응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다시 집중</p>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 라.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3): '복합적 수요에 대한 지원체계 불일치'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와 위기학생 지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p><b>34.8%</b></p> <p>중학교 교사 피해 경험률 (고등학교 25.5%)</p>	<p><b>22.1%</b></p> <p>가장 흔한 침해 유형: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일선적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p>	<p><b>교사 단독 대응</b></p> <p>ADHD·경계선 지능·정서행동 위기 등 복합적 학생 수요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 (국교위 특별위원회, 2024)</p>
<p><b>언론 보도</b></p>	<p><b>연구결과 및 보고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요신문 (2026.6)</b></li> </ul> <p>“손 내밀 곳 없는 교실”</p> <p>A초중고생 기준 국내 경계선지능 추정 규모가 약 78만명(인구의 13.59%) 그러나 법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기초학력보장법, 특수교육법, 학습부진 대책이 분절적으로 적용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KEDI(2025)</b></li> </ul> <p>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배제나 교사 분리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원하는 체계와 연결해야 함.</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승호·이고은 (2024)</b></li> </ul> <p>학생 분리의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돼도 상주 인력을 채용·운영하기 어렵고 보호자 인계가 작동하지 않아 동료교사와 관리자가 부담을 떠남</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지혜 외(2025)</b></li> </ul> <p>반복적 수업 방해가 일상화되고 지역 학교별 분리조치 운영이 다르며, 대체 지도인력, 공간 없이 법적 근거만으로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p>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 마.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4): '학교 조직문화 및 구조의 영향력'

학교별 침해 수준의 차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조·문화·신뢰와 관련된다.

<b>68.9%</b> 학부모 민원 신고가 걱정된다는 응답 (교사 5,578명)	<b>31.4%</b> 다섯 문항 모두 높은 부담 응답 집단 (불만족률 50.2%)	<b>침해와의 부적 관련성</b> '관리자 신뢰·교사 간 협력'은 침해 수준과 반비례
연구결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KEDI(2025)</b>                      침해 수준이 높게 인식되는 조건은 보상 중심 학교 운영, 개인주의적 문화, 행정업무 과다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 수준은 학교 특성과 연관성이 높음.                 </li>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국교위 특별위원회(2024)</b>                      관리자가 갈등을 교사 탓으로 돌리거나 결정을 미룰 때 민원과 침해가 장기화됨. 관리자 리더십과 협력적 조직문화가 제도 실행의 핵심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이승호·이교은 (2024)</b>                      학교장 책임 강화가 은폐·축소를 줄이는 긍정적 변화로 체감됐지만, 위원회의 절차화와 민원대응팀의 형식화가 함께 지적됨                 </li>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안지혜 외(2025)</b>                      관리자 태도에 따라 제도 작동이 물리지고 동료의 침묵이 2차 피해와 미신고로 연결. 반대로 동학년과 외부 교원 네트워크 지지는 회복의 기반으로                 </li> </ul>	

03. 교육활동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

### 바. 침해 실태의 주요 특징(5): '권리대립을 넘어 신뢰 회복 논의로의 확대'

"교사 대 학생·학부모의 대립으로만 설계된 정책은 지속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b>공동체와 신뢰의 약화</b> 서로를 대립, 배척하는 존재로 인식하면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균열로 연결	<b>공공성·학습권 연결</b>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는 학교 교육·학생 성장의 조건	<b>전문성 및 전문적 권위</b> 교권 회복은 권익 강화가 아닌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과 전문적 권위 확보의 본질
언론 보도	연구결과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한국NGO신문 (2026.6.16.)</b>                      11개 학부모·교원·교육단체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출범. '사법화·엄벌주의를 지양하고 신뢰와 대화 중심의 회복적 접근을 강조' 하는 7대 실천원칙 발표                 </li>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서울신문(2026.6.14.)</b>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개 제안. 민주연구원은 응징형 기구가 아닌 통합관리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를 강조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국교위 특별위원회(2024)</b>                      교권 회복은 교사만의 권익 강화가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li>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이승호·이교은 (2024)</b>                      법적·행정적 대응만 강화할 경우 교육 주체가 서로를 방어 대상으로 인식해 공동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나타남                 </li> <li> <span style="color: green;">✔</span> <b>안지혜 외(2025)</b>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인식과 교사 전문성의 사회적 저평가가 교육적 권위 약화. 교권을 학생의 학습권과 공공교육의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관계적 권리로 재정립 필요                 </li> </ul>	

# 04

## 정부 정책 대응 현황

### 04. 정부 정책 대응 현황

#### 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육부, 2026.1.)

##### 정책 추진 기반

 <b>9,961개교</b> 민원 대응체계 점검 대상 학교 (2025년)	 <b>6,550명</b> 정책연구 실무에 참여한 교원	 <b>교원·학부모</b> 교원단체·노조·학부모 의견수렴
--	--	---

##### 정책의 전환적 의미

<b>민원 처리의 주체</b>	교원 개인	▶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의 기관 책임
<b>해결이 어려운 사안</b>	학교 내에서의 소진 및 대응한계	▶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는 경로 구체화
<b>지원의 시간축</b>	사후 심의·제재 중심	▶	예방-초기 대응-법률·심리 지원-회복의 연속체계
<b>학교장의 위치</b>	책임은 있으나 권한·전문성 부족	▶	긴급조치 권한과 관리자 연수로 보완

04. 정부 정책 대응 현황

## 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교원 개인 대응에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의 기관 책임으로"

<p><b>중대 침해 엄정 대응·교원 보호</b></p> <p>고발·과태료·긴급조치·마음돌봄</p> <p>중대 사안 고발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중대 피해교원 특별휴가 확대</p> 	<p><b>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b></p> <p>표준모델·창구 단일화·관할청 이첩</p> <p>민원대응팀을 통한 민원 처리, 학교 대표번호·온라인 등으로 민원창구 단일화,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이첩</p> 
<p><b>지역 보호 지원체계 확대</b></p> <p>지역번호 +1395·원스톱·지역센터·교원보호공제사업</p> <p>센터·팀 112개, 인력 500명 목표, 조기 분쟁조정·법률상담 확대</p> 	<p><b>안전한 환경·존중 문화</b></p> <p>상담공간·관리자 역량 강화</p> <p>민원상담실 약 750실 추가, 관리자 실무연수, 학부모 협력교육</p> 

04. 정부 정책 대응 현황

## 다. 정책 시행 현황

1.22	학교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창구 일원화·악성민원 이첩·센터 확대	시행 추진
2.19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	중대 상해·성폭력 사안 학교장 긴급조치	시행 중
2.27	교원휴가 예규 개정	중대 범죄 피해 시 특별휴가 5일 추가	시행 중
3.1	학생생활지도 고시 개정 시행	상위 법령과 중복·위임사항 정비	시행 중
3.4	교육활동 보호·학교민원 매뉴얼	현장 처리 절차와 기준 개정·배포	배포
11.20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개정	관할 학교 교사가 위원의 20% 이상	시행 예정
12.3	교원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관할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가능	시행 예정

04. 정부 정책 대응 현황

**라. 실태 특징에 따른 정책 과제**

실태 주요 특징	관련 정책 주요 방안	남아 있는 과제
사건화 이전의 위축 개선	공식 민원창구, 개인정보보호, 1395 상담	신고·조사 이전의 불안·자기검열 감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갈등 책임의 개인화 극복	민원대응팀 전담, 학교장 조치권, 관할청 이첩	교사 60.3%가 여전히 민원 담당: 실질적 책임·권한의 이동
학생 다양성에 적합한 지원	중대 침해 긴급분리, 분리지도실 공간 확충	복합적 정서·행동 지원 인력과 및 학교 특성 반영 강화
학교 조직문화 및 구조와의 연계 강화	관리자 실무연수, 표준모델, 센터 확대	학교 관리자의 지원 역할 강화 및 학교 문화·업무 구조 개선
공동체, 신뢰 회복 논의 확대	수업권 보장, 학부모 협력교육, 존중문화 홍보	교사의 전문적 권위 회복 및 학교 공동체·신뢰 관계 강화

05

**나가는 말**

05. 나가는 말

## 실질적 보호와 지원 실행 체제 구축, 나아가 전문성과 전문적 권위의 보장까지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받고 '전문적 권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관계·문화·사회적 환경을 구축·보장하여 학습권을 실현하는 데 있다.

- 1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는 전문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 조건이다
- 2 전문적 권위는 법적 권한만이 아니라 전문성·역량·신뢰·책임의 결합이다
- 3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작동할 때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이 함께 보장된다

### 참고문헌

#### [언론 보도자료]

- 서울신문(2026.1.23.),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 울산매일(2026.5.15.), "정서적 아동학대, 교사 마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 일요신문(2026.6.), "'경계선 지능' 아이들 손 내릴 곳 없는 교실."
- 주간경향(2026.5.15.), "말 한마디 잘못하면 초등교사 86% 아동학대 신고 불안... '스승의 날' 초라한 스승의 초상"
- 한국일보(2026.6.17.),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에 멈춘 교실... 교사 10명 중 9명은 무혐의."
- 한국NGO신문(2026.6.16.), "넷플릭스 참교육 열풍 속 교육위기 경고... '교육공동체신뢰회복국민운동' 출범 "

#### [문헌 자료]

- 교육부(2026)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 교사노동조합연맹(2025). 2025년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 국가교육위원회(2025).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 국회도서관(2025).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Data&Law. 2025-13호(통권 제38호).
- 김민영 외(2025).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5-CB-01.
- 김지선, 전제상(2026). 교권보호 5법에 관한 교원 인식 분석, 2026년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대학교경영연구소 연합 춘계 교원정책포럼 자료집 35~55.
- 이승호, 이고은(2024).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 정책의 변화와 과제. 초등교육연구 37(4), 139~168
- 안지혜 외(2025) 교권보호5법 개정 이후 초등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경험과 인식 연구. 대구교대 초등교육연구논총 41(4), 51~7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6).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 결과.
- 한국교육개발원(2025). 미래 지향적 교권보호 정책의 방향성 모색. 제227차 KEDI 교육정책 포럼 겸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 포럼 자료집. RM 2025-17.
- 황준성(2023).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2023.8.10.) 발제 자료. [www.youtube.com/watch?v=wx72feer5XY](http://www.youtube.com/watch?v=wx72feer5XY)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발제

02

## 기조발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 그동안의 경과

- 2023.7 서울 서이초 사건**  
교권 추락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공동체 붕괴에 경종을 울림
- 2023.9 교권보호 5법 개정·교권 회복 특위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각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 (위원장 고대혁)
- 2024.9 13회 정기회의·중장기 정책 발굴**  
주제발표·자유토론, 소위원회운영을 통한 과제 구체화
- 성과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제안**  
현황 진단 → 개선 방향 중심의 중장기 정책 패키지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와 지지,  
상호 존경과 소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2024)

분야 1

## 교원의 안전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정비
- 1-2 학교폭력예방법 정비
- 1-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기반 마련
- 1-4 법정 의무교육 개선 법령·지침 마련

01

II.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한계

##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한계

### 지금까지의 노력

- ✓ 교원보호 5법 개정(2023) → 제도적 기반 마련
- ✓ 학생생활지도 고시(2023.9) 및 해설서 보급
- ✓ 교육감 의견서 제도 → 아동학대로 신고된 1,870건 중 72%(1,352건)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인정 (2023.9~2026.2)
- ✓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원 요청만으로 개최(2024.3)

### 여전한 한계

- ✓ 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
- ✓ ('아이기분 상해죄', '지승사자법')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개념의 모호성 → 개념 구체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 단,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아동권리 침해 우려로 여·아·(복지) 학계 간 이견 등으로 통과 지연
- ✓ '정당한 생활지도' 판정에도 지자체 조사·수사가 이어지는 한계
- ✓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63%)·치료요양(11%) 중심 → 법률·소송 지원은 제한적

제도 강화와 함께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정책 실효성 확보가 가능

II. 분야별 핵심 과제 · 개관

## 4대 분야 15개 핵심 과제

 <p><b>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b></p> <p>4개 과제</p>	 <p><b>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지원</b></p> <p>4개 과제</p>	 <p><b>전문성 신장을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b></p> <p>4개 과제</p>	 <p><b>소통 강화 및 상호 신뢰 문화 조성</b></p> <p>3개 과제</p>
--	--	--	--

분야 1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정비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민원성 고소 빈발</li> <li>✔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추상성</li> <li>✔ 면책·교육감의 견서에도, '정당한 생활지도' 판정 사안에 지자체 조사·수사 지속</li> <li>✔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교사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 구체화 → 교육적 훈육 면책 기준 명확화</li> <li>✔ 교원 대상 조사는 교육 현장 전문성을 갖춘 요원이 진행</li> <li>✔ 악의적 신고 처벌 규정·무료 법률지원 등 교사 법적 보호 강화</li> <li>✔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li> <li>✔ '정당한 생활지도' 판정 시 수사 비화 방지 절차 마련 등</li> </ul>

참고

##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 예시

제 17조 (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또는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	
<b>제○○조</b>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훈육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훈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지도를 위해 이루어진 신체적, 정서적 훈육 행위로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이해를 구한 경우 3. 훈육의 방법과 강도가 사회 통념상 적절하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b>제○○조</b>	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즉시 학대로 간주하지 않고, 신고된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② 신고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교사의 교육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한다.
<b>제○○조 (악의적 신고에 대한 처벌)</b>	①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행위를 악의적으로 학대로 신고하여 교사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사에 대한 악의적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신고자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③ 허위 신고로 인해 교사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교사는 해당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허위 신고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b>제○○조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b>	①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지원의 범위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포함한다.

분야 1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2. 학교폭력예방법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달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건수 증가
-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및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학교의 재량권이 없어서 관련 사안 처리 등 학교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
-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저경력자, 복직자, 전입자, 기간제 교사 등에게 맡겨지며, 특히 지원청의 심의위원회 담당도 단기간 교체 빈발
- 준사법기구화·임시연계로 경미 사안도 불복·행정소송 빈발
- 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심의실 부족으로 심의 절차 지연 등

### 개선 방향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객관적으로 경미한 갈등은 자체해결 또는 생활고시에 따라 교육적으로 지도하도, 학부모의 불복 시 조사관 및 지원청 학폭위로 이관함
-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입시문제와 밀접하여 악의적인 맞선고와 잦은 불복의 원인이 되어 학교 교육력 약화로 이어짐.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축소/폐지의 점진적 검토 논의 필요
- 엄벌주의 기초의 학폭예방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장기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적 관점에서 재검토

분야 1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참고]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국제 비교

학교폭력을 '별도 단독법 + 학교 준사법 절차'로 다루는 나라는 극히 소수(한국, 일본, 필리핀) → 다수는 교육법 조항의 일부 또는 일반 형사법 체계로 접근

대응 모델	국가	법적 근거	핵심 특징
단독법·학교 심의형	한국	학교폭력예방법(2004)	학폭위가 조사·심의·제17조9호(퇴학) 조치 등 → 준사법 절차
단독법·학교 심의형	일본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2013)	학교에 인지·대응 의무
교육법 조항형	영국	교육·감독법 §89(2006)	교장에 예방 의무 부과, 학교 정책 의무화
주(州)법·정책형	미국	연방법 없음 · 49개 개별 주법	주별 정책(정의·신고·대응) 의무화
기관 책임형	스웨덴	차별금지법·학교법	학교에 예방 입증책임, 미흡 시 제소·배상
일반 형사법형	독일	별도법 없음 → 형법으로 처리	모욕·협박·상해 등 개별 형사범죄로 처리
일반 형사법형	캐나다	연방 형법으로 처리	협박·폭행·형사적 괴롭힘 등으로 포섭
형사처벌 강화형	프랑스	학교폭력 형사범죄화(2022)	별도 형사조항, 최대 징역 10년

한국은 학교폭력을 별도 단독법으로 제정하고, '준사법적'으로 다루는 세계적으로 드문 모델  
→ 그만큼 적용범위와 절차 수행, 행정 부담이 큼. 경미 사안은 관계회복으로, 중대 사안만 사법으로 분리하는 국제 흐름을 참고할 필요

분야 1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기반 마련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고시(교육부고시 2023-28호, 2023.9)·해설서보급에도 제도 실행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심각한 수업 방해·교사 폭행에 대한 구체적 분리·제지 기준 미비
- 제지·분리를 위한 전문인력·비상벨·분리실 등 인프라 부족
- 아동학대 피소 우려로 폭행 현장에서도 제지 곤란

#### 개선 방향

- 위기 위험 학교부터 전문인력 시범 배치 (예: 캐나다 행동지원가 포함 특수교사의 지원)
- 퇴직 경찰, 상담사보다는 위기 학생(심각한 수업 방해, 폭행, 비행)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긴급 대응 및 분리, 조사할 행정 처리 전문인력 필요
- 단계적 대응체계 개발·보급, 모의훈련 정례화
- 정당행위로 인한 경과실 면책 등 안전한 환경 도모

#### 해외사례

캐나다 : 교사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교사·행동지원가(Behavior supporter worker), 관리자, 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5~6명이 '팀'으로 대응

분야 1 ·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4. 법정 의무교육 개선을 위한 법령·지침 마련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학교가 교육활동에 반영해야 할 법령·지침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만들어진 법령과 지침으로 인해 범교과 요구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배당을 초과(중학교 지침 208%)
- 교과교육과정과 중복되어 자율·재량 운영 침해
- 운영계획·외부강사·정산 등 부수 행정업무 수반

#### 개선 방향

- 교육입법 사전·사후 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 범교과학습 관련 사항의 자율적 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조례의 교육적 효과 평가
- 특별교부금 심의(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분야 2

##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지원

2-1 유치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2-2 특수교육 교원 교권 회복

2-3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직무 조정

2-4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 02

분야 2 ·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2-1. 유치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구축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 낮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미비  
\* 독감확진에도 3일 연속 출근 유치원 교사 사망(2026.1.)
- ✔ 12개 교육청은 교원보호위원회 유치원 관련자 0명(최근 5년, 교육부 2023)
- ✔ 비담임 3%에 불과 — 대부분 담임 외 업무·행정까지 도맡음
- ✔ '생애 첫 학교'로서 유치원과 법적 교원으로서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식 부족
- ✔ 유치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상급학교로 이어지는 경향 지속

#### 개선 방향

- ✔ 교권 보호 제도·행재정 지원 시 유치원 교원을 포함
- ✔ 유아·유치원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재검토
- ✔ 유치원 교원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 한 예산 및 인력 지원책 모색과 개선 방안 마련  
(병설 행정 분리 등 업무여건 개선 예산·인력 지원 등)
- ✔ '처음학교로', '함께학교' 등 접근성 고려한 인식개선 캠페인

분야 2 ·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2-2. 특수교육 교원 교권 회복을 위한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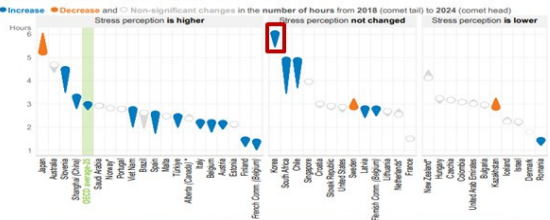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에 의한 폭행, 민원, 고소 등 교권 침해 심각</li> <li>✔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법적 기준(4명)을 초과(일반학교 5.1명)</li> <li>✔ 행동문제 증가(자폐성장애 비율 상승)와 위기행동 대응 체계 미비</li> <li>✔ 지원인력 중 사회복무·자원봉사비율 약 40%로 전문성, 안정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사 전문 지원인력 확충(1학급 2교사제 등)</li> <li>✔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으로 전환·책무성 강화</li> <li>✔ 행동중재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현장기반 행동중재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li>✔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인력 추가 배치</li> <li>✔ 위기 행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사 보호대책 수립</li> <li>✔ 심리정서행동에 대한 병의원 등 전문의료기관 연계 강화</li> </ul>
<p><b>비교</b> 국가별 전체 교원 대비 특수교육 교원의 비율 : 미국(10.8%), 일본(6.9%), 독일(6.7%)에 비해 한국은 4.4% 수준임</p>	

분야 2 ·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2-3.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직무 조정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연의 교육활동(수업·연구·학생지도) 집중 곤란</li> <li>✔ 주당 행정업무 시간 OECD 국가 중 최대(TALIS 2024)</li> <li>✔ 새로운 국가정책 사업들이 증가(고교학점제·사교육·늘봄(2025 전국→2026 전 학년) 등 신규 업무 지속 증가)</li> <li>✔ 교원·행정직·공무직 간 업무 경계 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종 간 임무 명료화 — 교사 본연의 역할 중심 법률 명시</li> <li>✔ 교육지원청 역할을 '학교 지원'으로 명확화·공통업무 이관</li> <li>✔ 늘봄지원실·전담인력 배치로 교원 업무 분리</li> <li>✔ 위탁·외부 관리 활용으로 행정부담 경감</li> </ul>

Figure 3.5. Changes in reported administrative workload and related stress, from 2018 to 2024  
Change in weekly hours spent on administrative workload and in the share of teachers reporting administrative work as a source of stress, based on responses of lower secondary teachers



OECD, TALIS Report(2024)

분야 2 · 교육 환경 개선 지원

## 2-4.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여건 조성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심화·상담 수요 급증 * 6-17세 소아청소년인구의 16.1%가 정신질환을 1회 이상 경험하고있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 확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낮고 1인당 담당 학생 수 과중</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담관련 고경력자가 저경력 상담교사를 지원하는 체계 정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위기 학생을 학교·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구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담 인력의 역량체계 및 연수표준안 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심군의 전문기관 연계율 78.8%(2023)에 그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학교 단위 위기 사안 통합 관리 체계 및 Wee센터 중심의 학교 위기 사례 지원 컨설팅 확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다양한 대안학교, 보호관찰관, 감호시설, (의료재활)소년원 확충 필요</li></ul>

분야 3

##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의 사회적 신뢰 회복

3-1 예비교사 대상 교육과정 개선

3-2 교직 전문성 수행 기준 확립

3-3 교장·교감의 리더십 강화

3-4 승진제도 등 교사 자격체계 개선

03

분야 3 · 전문성 신장을 통한 신뢰 회복

### 3-1. 예비교사(교·사대) 대상 교육과정 개선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 교육과정의 역동적인 학교 현장과 사회 변화 반영 미흡</li> <li>✔ 20대 초중반의 신규 교사가 30대 이상의 학부모와 숙련된 상담을 과연 전개할 수 있는가?</li> <li>✔ 상담 관련 과목이 2학점(생활지도와 상담)에 불과</li> <li>✔ 현장실습 시간 부족(중등 4주)으로 대응 역량 한계</li> <li>✔ 교권 침해·학교혁신 등 현장 요구 수용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숙지, 내용 이해 중심의 교원양성과정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교육과정 대폭 보강(생활지도, 상담, 인성교육)</li> <li>✔ 현장실습 시간 확대 및 실습제도 전면 개편: 지도교사-교생-교수 삼원(Tripatite) 협력적 지도 체계 구축(독일 사례)</li> <li>✔ 교직 소양 강화 — 교육법 교육·교권 침해 대응·학부모 상담 역량 대폭 함양</li> <li>✔ 학생 이해·대처를 위한 실천적 교과 개발·편성 및 이수</li> </ul>

분야 3 · 전문성 신장을 통한 신뢰 회복

### 3-2. 교직 전문성 수행 기준 확립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의 위기는 곧 '교사 전문성의 위기'</li> <li>✔ 권위의 핵심에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of teaching profession)이 있어야 함</li> <li>✔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외 세부 전문성 기준 미제시</li> <li>✔ 추상적 역량 기술에 그쳐 실질적 점검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전문성 기준 제시 — 양성·임용·연수 적용</li> <li>✔ 전문성 점검·개발 결과의 개인별 환류체계 구축</li> <li>✔ 실행여부 확인이 불투명한 성취기준 기반 교육과정 체계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수권체계 개편 필요(교사중심 교육과정 수권 체계로 개편)</li> <li>✔ 전문기관 설립(싱가포르 NIE 참고)으로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전문성 개발 지원</li> </ul>

**비고** 캐나다 BC주 '교사법' 제정을 통해 전문성 개발 의무화, 독일 NRW주 '학습전문가' 역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극적인 개발 지원

분야 3 · 전문성 신장을 통한 신뢰 회복

### 3-3. 교장·교감의 리더십 강화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 갈등 조율 관리자 리더십 문제 반복 지적
- ✔ 서이초 사건 이후 언론보도 분석 22건 중 18건이 부정적 유형 (김승호·장수명, 2024)
- ✔ 책임외면형·책임추구형·결정회피형 다수
- ✔ 교감·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경력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 등 '규범적 전문성'이 비중 있게 고려되는 반면, 실제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천적 전문성'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
- ✔ 자격연수 중 소통·갈등관리 비중 10% 미만

#### 개선 방향

- ✔ 교장·교감 직무수행 표준 개발
- ✔ 선발·양성에서 '실천적 전문성'·민주적 소통역량 반영
- ✔ 연수를 강의식 → 구체적 갈등 상황 학습 중심으로 개편
- ✔ 갈등중재형·사전소통형 긍정 리더십 사례 발굴·공유

분야 3 · 전문성 신장을 통한 신뢰 회복

### 3-4. 승진제도 등 교사 자격체계 개선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 가산점·연공서열 중심 승진, 적체 심각
- ✔ 리더십·갈등조정·소통보다 가산점이 좌우
- ✔ 수석교사 수 절대 부족으로 수업의 질 향상 곤란
- ✔ 교무·학생부장 등 기피 보직에 저경력자 배치

#### 개선 방향

- ✔ 국가 수준의 승진제도 개선 기구 추진
- ✔ 교장 중임 보장 폐지·조건부 중임, 공모제·교장선출보직제 검토
- ✔ 수석교사제 활성화(별도 정원·연구업무 지원)
- ✔ 수습·선임교사제 도입 시 현장 속의로 부작용 최소화

분야 4

##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및 상호 신뢰 문화 조성

4-1 특이 민원 예방 및 대응 체계 정비

4-2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4-3 상호신뢰하는 교육문화 창조

# 04

분야 4 · 소통 강화 및 신뢰 문화

### 4-1. 특이 민원 예방 및 대응 체계 정비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 보호자 등의 악성·특이 민원 광범위
- ✔ 자기 자녀를 위한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간섭 및 갑질 만연
- ✔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감시 증가 등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음성권 침해 소지
- ✔ 자기 자녀의 진학에 유리하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과도한 간섭
- ✔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과보호가 학생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
- ✔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의 자율성 침해 등 교육과정 운영 방해
- ✔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방안 미흡

#### 개선 방향

- ✔ 생활교육 사안 발생 시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행동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와 협력하도록 학칙 등에 학부모 역할 명시
- ✔ 학부모가 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 검토, 학부모 교육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및 실행
- ✔ 17개 시도 교육청 악성 민원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학교차원의 민원 대응력 제고
- ✔ 교권 회복대책 마련을 위하여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 폭언, 폭행,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한 심층연구와 철저한 원인분석 필요

분야 4 · 소통 강화 및 신뢰 문화

## 4-2. 교직 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이 '서류상'으로만 존재
- ✔ 학부모 임원이나 이웃 학부모, 맘카페, 유튜브, 블로그, 학원 등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 조장
- ✔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학교의 운영, 학급계획, 교육과정, 학부모활동 등의 질문이 악성민원으로 취급될까봐 위축됨

### 개선 방향

- ✔ 민원 FAQ 정비·AI 챗봇·ARS, NEIS 온라인 민원 시스템 조속 안착
- ✔ 온라인 민원시스템(핀란드 '윌마' 참고)  
-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 ✔ 학부모회 지원 - 침해 예방교육·중재 활동
-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관련 법 엄격히 적용(반복적 부당간섭이나 폭언에 대한 통신 차단 (대면 및 음성 통화) 및 교육활동 침해 처리와 형사 고발)

**비교** 핀란드 윌마(Wilma): 학부모-교사 메시지, 출결관리, 학습상황 확인, 학교행정을 위한 연락 창구로 기능

분야 4 · 소통 강화 및 신뢰 문화

## 4-3. 상호신뢰하는 교육문화 창조

### 현황 진단 및 문제점

- ✔ 교사-학생-학부모간 불신 사례 발생
- ✔ 사교육 의존 심화 -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
- ✔ 수업 집중 참여 저하 등 공교육 신뢰 하락
- ✔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소통 부재의 악순환

### 개선 방향

- ✔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도입('24~)·내실화로 권리·책임 균형
- ✔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료 개발·실질 활용 확대
- ✔ 회복탄력성·사회정서교육(SEL)으로 정서문제 예방
- ✔ 상호존중 공동체 약속·성공사례 발굴·공유

III. 교권 개념 논의

## 교권의 층위·규범적 토대 검토

### 개념의 층위

- **광의(廣義) = 교육권(教育權)**  
-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부당한 간섭 없이 가르칠 권리 → 수업·교육과정·평가·생활지도권
- **협의(狹義) = 교원의 권리·권위**  
- 신분 보장 등 교사의 권리 + 전문직으로서의 권위(authority)

### 규범적 토대 - 헌법, 법률, 국제규범

- 헌법 제31조  
① 교육받을 권리,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⑤ 교원지위 보장주의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의 전문성 존중·지위 우대·신분보장), 제12조(학습자 인권 존중)
-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보호조치(제20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권 재출(제17조)
- UNESCO-ILO(1966)「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 교직은 전문적, 전문적 자유 보장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 1. 21.>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2. 19.>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2. 19.>

III. 개념의 재정립

## 판례의 태도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한 율동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초등학교 학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므로,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의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III. 개념의 재정립

## 교육활동 보호의 논리 구조



교권은 미래 세대 학생에게 정상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는 '디딤돌' 임.

IV. 현실 진단

## 알파세대의 등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국면

알파세대(2010~2024년생)는 출생과 동시에 디지털을 접한 세대 — 짧은 집중력, Digital Only, 정서행동 문제 생활지도의 새로운 난제로 부상

Alpha Gen의 특징 • The most materially endowed generation ever! • The great screen age! • Globally connected and influenced.

<p><b>디지털 과의존</b></p> <h3 style="text-align: center;">42.6%</h3> <p><b>청소년(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동(3~9세)도 25.9% - 청소년</li> <li>· 유아동만 전년 대비 증가</li> <li>· 과의존군은 영상·메신저·검색 등에 몰입 → 주의·자기조절 저하</li> </ul>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p>	<p><b>집중력 부족</b></p> <h3 style="text-align: center;">10분</h3> <p><b>"미니 수업은 10분 이내로 끊어야 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집중력, 낮은 학습 지구력, 비판적 사고, 정재(定坐) 곤란</li> <li>· 선행 강의보다 즉각적, 시각적 콘텐츠 선호 → 전통적 지도 방식과 충돌</li> </ul>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Huss &amp; Eastep(2024)</p>	<p><b>조기 디지털 노출</b></p> <h3 style="text-align: center;">40%</h3> <p><b>만 2세에 태블릿을 보유한 아동 비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 미만 → 급증; 8세 이하의 51%가 본인 모바일 기기 보유</li> <li>· 이른 노출이 자기조절, 대면 상호작용 발달에 영향(학계 우려)</li> </ul>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Common Sense Media(2025)</p>
--	--	--

교권 침해의 주된 유형이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24.1%→32.4%, 교육부 2024 실태조사), 알파세대 특성은 교사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적 지원을 필요

IV. 현실 진단

### 소자녀·교육열 시대의 학부모 - '타이거맘', '헬리콥터맘'의 잦은 등장과 더욱 높아진 개입

출산율이 1명도 못 미치는 '소자녀' 시대 — 한 자녀에 기대·투자가 집중되고('타이거맘'식 집중양육; Chua, 2011), 학교·교사에 대한 기대와 개입도 증가

**저출생 추이(한국)**

합계출산율 1.23명('10) → 0.98('18, 첫 1.0미만) → 0.72('23, 역대최저) → 0.75('24)

**지금 학령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

**외동 · 1자녀 가정 확대**

61.3% 첫아이, 33.7세 엄마

전체 출생아 중 '첫째' 비중(2024) → 역대 최고

- 2023년 처음 60% 돌파 → '남아도 한 명' 경향 심화
- 평균 출산연령 33.7세 → 낮은 출산 + 적게 낳아 → 한 자녀에 집중

**과보호, 집중 양육**

헬리콥터맘

과보호('헬리콥터') 양육이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을 부정적으로 예측

- 소자녀·고령 출산 → 자녀에 대한 과보호·과개입 경향
- 자녀의 자기조절·사회성 발달을 저해

인해연·설경옥(2020)

한 자녀의 '완벽한 성공'을 향한 기대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변질. 알파세대(학생 특성)와 소자녀·타이거맘(학부모 특성)이 맞물려 생활지도·민원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IV. 현실 진단

### 교내 협력·협조체계의 빈곤 - OECD 최하위권

한국 교사는 좋은 사제관계 속에서도, 교사들이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협력은 부족함.

월 1회 이상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비율 (한국)

다른 교사 수업 관찰 후 피드백	<div style="width: 3.7%; background-color: #004a99;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div> <b>3.7%</b>	55개국 중 52위
여러 학급·학년 간 합동 수업 활동	<div style="width: 4.3%; background-color: #004a99;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div> <b>4.3%</b>	55개국 중 55위 · 최하위
공동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	<div style="width: 19.4%; background-color: #004a99;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div> <b>19.4%</b>	55개국 중 55위 · 최하위
동료와 수업자료 교류	<div style="width: 23.7%; background-color: #004a99; height: 10px; display: inline-block;"></div> <b>23.7%</b>	55개국 중 5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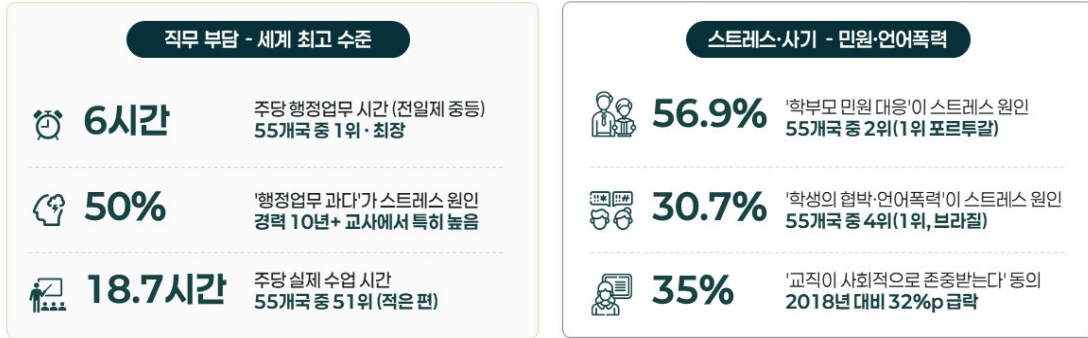
자료: OECD, TALIS 2024

관계는 좋지만, 구조가 없는 상태. 학생-교사 관계 '좋다' 98.2% (55개국 중 7위)로 최상위권이나, 교사 간 협력은 최하위 → 결국 교사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고립 구조임.

IV. 현실 진단

## 협력은 최하위, 부담은 최상위 - 행정·민원의 국제 비교

한국 교사의 직무환경은 '高부담, 低협력, 低지지'로 요약됨. 행정업무는 OECD 최장, 학부모 민원·학생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세계 최상위권!



OECD Education GPS TALIS(2024)

직무 만족 84.7%(OECD 89%)·고용조건 만족 51.5%(OECD 68%)로 낮음  
- 교육활동 보호는 곧 교사의 '직무수행 환경' 개선이자 학습권 보장의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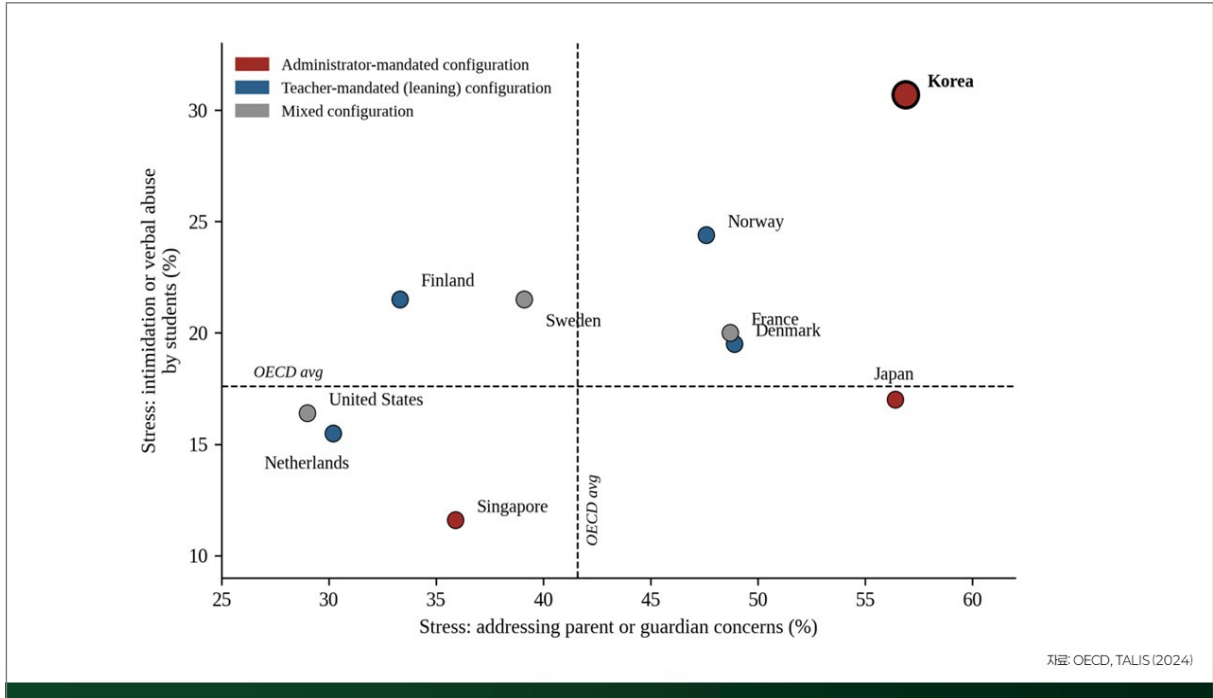
IV. 현실 진단

## 교사 스트레스 요인의 국제 비교

중학교 교사 중 해당 요인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상당히'+ '매우 많이') 응답한 비율(%)

국가	과도한 행정업무	학급 규율 (생활지도) 유지	학생의 위협·언어폭력	교육당국의 변화 요구	학부모(보호자) 민원 대응
한국	49.6	48.8	30.7	42.7	56.9
일본	62.8	35.5	17.0	43.5	56.4
싱가포르	52.8	38.0	11.6	41.6	35.9
핀란드	40.2	43.7	21.5	27.2	33.3
스웨덴	64.8	40.1	21.5	19.8	39.1
덴마크	42.3	38.0	19.5	26.9	48.9
노르웨이	52.6	37.9	24.4	32.1	47.6
네덜란드	50.0	35.9	15.5	16.8	30.2
프랑스	57.7	48.6	20.0	62.0	48.7
미국	28.9	43.5	16.4	31.0	29.0
OECD 평균-27	51.7	44.8	17.6	39.3	41.6

자료: OECD, TALIS 2024



IV. 현실 진단

## 세 권리의 부조화와 학교교육의 근본 위기

본래 '상호협력관계'여야 할 세 권리(헌재 89헌마88) — 그러나 오늘의 교실에서는 권리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임.

<p style="text-align: center;"><b>교사의 교권</b></p> <p style="text-align: center;">수업·생활지도의 권한</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현실의 왜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정당한 생활지도 조차 위축·'방어적 교육'으로 후퇴</li> <li>· 신고 1,870건 중 72%(1,352건)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로 인정 (교육감 의견서, 2023.9~2026.2)</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학습자의 학습권</b></p> <p style="text-align: center;">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현실의 왜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문제행동을 제지 못해 다수 학생의 배움이 흔들림</li> <li>· '생활지도 불응' 24.1%→32.4%로 증가 (교육부 2024학년도 실태조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학부모의 양육권</b></p> <p style="text-align: center;">자녀 교육에 관여할 권리</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현실의 왜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향한 정당한 관심이 과도한 민원·간섭으로 표출</li> <li>· 교육과정·평가·생활지도에 대한 개입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짐</li> </ul>
--	--	---

**위기 양상** 사과, 대화, 훈육이 신고, 민원, 소송으로 대체되며, 학교의 전인적 성장 지원 기능이 흔들리고 있음.

IV. 현실 진단

##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제도·규칙의 범람

세 권리의 충돌을 조정해야 할 리더십은 비어 있고, 그 빈자리를 법령·규칙이 메우면서 교사의 교육자 역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교사·관리자의 리더십 위기

- ✔ 갈등을 조정할 관리자의 리더십 공백
- ✔ 서이초 후 학교장 리더십 분석 22건 중 18건이 부정적 유형 — 책임외면·책임추구·결정회피 (김승호·장수명, 2024)
- ✔ 교장·교감 자격연수 중 소통·갈등관리 비중 10% 미만
- ✔ 교사는 민원·분쟁을 홀로 감당 → 소진과 교실 통솔력 약화, 교사 고립

### 교육계로 침투한 법령·제도·규칙의 범람

- ✔ 학교가 반영할 법령·지침의 기하급수적 증가
- ✔ 국회 발의 교육 법률안: 18대 959건 → 21대 1,188건 (교원 특위 보고서, 2024)
- ✔ 사회 이슈마다 신설되는 법교과 의무교육 — 요구 시간이 창체 배당을 초과(중학교 지침 208%)
- ✔ 행정업무 시간 OECD 최장 수준(주 6시간, 55개국 중 1위 — TALIS 2024)으로 수업·연구 시간 잠식

**결국**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신고를 피하고 규정을 지키는 직업인'이 점점 되어 감

IV. 현실 진단

## 법은 교장에게, 현실은 교사에게 - 떠넘겨지는 민원

### 법과 제도가 정한 것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① "교장은 ...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
- ✔ 2023년 교원보호 5법으로 '민원처리 책임'을 교장 임무로 명문화
- ✔ 민원대응팀은 교장·교감·행정실장 중심 운영 (교육부 지침, 2024.3)
- ✔ 전국 13,952개교 중 98.9%가 민원대응팀 '구성' 완료 (교육부, 2024.5)

### 학교 현실

- ✔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 72%, 민원대응팀 전담은 2%에 불과
- ✔ 초등교사노조 설문(교사 1,067명) — 탐·교사 병행 25% (에듀프레스 2024.11.25)
- ✔ 제주: 교사 24%는 민원대응팀 구성 여부조차 모름 (KCTV 2025.8.13)
- ✔ 경기: "주객전도된 민원대응팀... 여전히 교사가 해결" (경인일보 2026.4.14)

**구조적 진단** 법령상 책임은 교장에게, 현실의 부담은 최일선 교사에게 → 그 뿌리는 교육법 개정과 교육과정 수권체계!

IV. 현실 진단

## 교사 권리 약화의 이면 — 행정수권형 교육과정 수권체계

교육과정 문서를 1차로 '수령'하는 자(mandatee)가 체계를 가른다 — 우리나라는 교사가 아닌 행정가(교장)가 수령하는 '행정수권형' (교육개혁패널, 2007)

구분	행정수권형 — 한국/동아시아(현재)	교사수권형 — 북서유럽(지향)
교육과정 유권해석	상급 교육행정당국이 1차 해석	교사가 1차 해석
학교장의 역할	교사의 상위 유권해석자·명령자	교사활동의 조직자·지원자
교과서의 성격	공식 교육과정 문서의 일부	교사가 택하는 학습참고자료
교사의 지위	계층의 최일선 작업자	독자적 권위를 지닌 전문직

**현실의 모순** 컨설팅 장학도 결국 '지시'로 수용 · '진도빼기형' 수업의 일반화, 구성주의, 융합 학습의 확산 곤란

민원이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것도 교사를 '최일선 작업층'으로 두는 이 위계의 산물  
 - 교권 향상의 근본은 '교사수권형'으로의 전환(교권회복위 과제 3-2)

IV. 현실 진단

## 법이 규정한 교사의 자리 - '명을 받아'에서 '양심과 전문성'으로

한국 교육법상 교사의 지위 규정은 '복종'에서 출발해 '법령 기속'에 머물렀음 - 본래는 '교사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으로 나아 갔어야 했음.

<p><b>복종 · 행정적 위계</b></p> <p><b>「교장의 명을 받아」</b></p> <p>구 교육법(1949~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li> <li>· 일제강점기 '훈도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조항에서 유래 - 전후 일부는 삭제했으나, 제정 시 의도적으로 부활</li> <li>· 약 50년간 교권을 제한한 대표적 문제 조항</li> </ul>	<p><b>법령 기속 · 미완</b></p> <p><b>「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p> <p>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④ 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교육법제체 전면 개편으로 '명을 받아' 삭제</li> <li>·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li> <li>· 복종에서는 벗어났으나, '법령의 일률'에 묶인 미완의 전진</li> </ul>	<p><b>전문적 자율 · 교사수권형</b></p> <p><b>「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b></p> <p>지향점 → 벌써 가야 했던 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직 교사가 교육과정의 1차 해석자로서 자율적으로 교육</li> <li>· 행정수권형 → 교사수권형으로의 전환과 맞물림</li> <li>· '무엇을'은 국가가, '어떻게'는 교사본인의 양심·전문성이 정함</li> </ul>
---	---	--

V. 종합  
방향



**현장성 강화**

법령 제·개정 시 학교  
현장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우선 경청



**교사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람의 마지막  
직업”으로서의 교사의  
중요성, 역할 변화  
(Allison Pugh)



**사회적 대화 기구**

국교위 주도의 지속적  
논의, 정책 개발, 제언과  
대국민 소통 창구  
→ 사회적 인식 개선



**협조적 문화와  
전문적 권위 회복**

부족한 교사 지원,  
협조적 문화 형성,  
높은 수준의 리더십과  
전문성 형성

V. 종합  
제언

**최우선**

**법·제도의 시급한 개정**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구체화)·학폭예방법·학생생활지도 고시 보완 → 가장 시급

**기반**

**교육 환경의 실질적 개선**

유치원·특수교육 포함, 상담교사 확대, Wee센터 중심 위기지원 인프라 강화, 폰 & SNS 프리 교육 환경 구축 검토

**신뢰**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실천적 양성과정, 전문성 기준 확보, 관리자 리더십 함양, 교사수권형 수권체계로의 전환

**문화**

**소통과 신뢰 문화의 정착**

학부모 역할 재구조화를 위한 교육, 민원 응대 시스템 재정비, 상호신뢰 교육문화 구축 → 교육공동체 회복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일선 교육청의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과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필요**

## 맺음말

###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디딤돌이다.

01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극단적 의견을 조정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



02 제도 강화에 더해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을 함께 추구한다.



03 긍정적 교육문화와 학교 교육의 성공 이야기를 함께 발굴하고 공유한다.



## 참고 문헌

### 학술자료

- 김승호, 장수영(2024). 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황에서 나타난 학교장 리더십 분석-서초교사 사건 이후 신문기사와 FGI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2(1), 367-398.
- 안혜연, 성경욱(2020). 부모의 웰리플러 양육과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 한국청소년연구, 31(3), 33-58
- Chua, A. (2011).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Bloomsbury publishing.
- Huss, J. A., & Eastep, S. (2024). A Tri-State Study of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Generation Alpha Students: Are Middle Schools Ready for "Generation Class?". In: inquiry in education, 16(1), 7.
- Pugh, A. J. (2024). The last human job: The work of connecting in a disconnected world. (김재경 역) 사람의 마지막 직업, 추수밭.

### 보고서/통계

- 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2024)
-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2025.5)
-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024.8)·개선방안(2025.12)
-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 2025.4)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4년 출생통계(2025)· 합계출산율·첫째아 비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25.3)

### 국제 통계

- OECD, TALIS 2024
- OECD, TALIS 2018
- OECD, Education GPS TALIS 2024.
- <https://gpseducation.oecd.org/CountryProfile?primaryCountry=KOR&threshold=10&topi>
- Common Sense Media, 2025 Census

### 법령

- 대한민국 헌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UNESCO-IL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

### 판례

- 대법원 2024.10.8. 2021도13926 판결
- 대법원 2024.9.12. 2020도12920 판결

# 토론

- [지정토론 1] 조재범(풍덕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2] 전은영(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3] 장세린(금구초등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4] 김은혜(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5] 이수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지정토론 6] 최종선(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 [지정토론 7]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 [지정토론 8] 김영식(덕양중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9]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토론  
01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  
한국교총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포럼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28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 교사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지정토론자로서 한국교총이 발표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합대책은 교권 침해를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II. 교원의 교육활동,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본격적인 제안에 앞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5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가운데 무혐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95%에 이릅니다. 신고 자체만으로 교원은 조사와 소명의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의 단 12%만이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대책들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업일마다 평균 4명의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며 통쾌한 판타지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도, 이미 많은 국민이 공교육의 위기를 현실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인력 재배치나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으로는 교사들이 마주한 이러한 현실 본질적으로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교총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실제로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은 교원정책과가,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폭력대책과가,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학생지원총괄과가 각각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처럼 사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보건복지부와도 얽혀 있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업무가 이렇게 여러 부서와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처럼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오는 사안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제와 현황보고에서도 짚어주셨듯, 교육활동 침해의 실태는 이미 여러 통계와 사례로 충분히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단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해법이며, 한국교총은 그 해법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개 영역, 스물세 개 과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 Ⅲ. 한국교총이 제안하는 해법 —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한국교총의 종합대책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예방, 조기개입, 사안 대응, 중대침해 책임, 후속지원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비어 있으면 전체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 전제입니다. 예방이 부실하면 사건을 막을 수 없고, 조기개입이 늦으면 피해가 커지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후속지원이 없으면 피해 교원의 고통은 길어집니다. 아래에서 다섯 영역, 스물세 개 과제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예방 대책 — 교권회복을 위한 환경조성

예방 영역은 교권 침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입니다. 현재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흥기나 방화물질 등 위험물질 반입을 금지하는 법령 강화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 중 흥기를 휘두른 사건, 경남에서 학부모가 흥기를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와 협박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과 AI 윤리교육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약 6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민원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악성 민원 대응 사례집 개발입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교육청 단위로 통합 관리해 대응 이력을 남기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원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동료 교원을 의심만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개선입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직원에게 '의심'만으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교육적 지도조차 신고 대상으로 오인되거나 동료 교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이른바 '제2의 아동복지법'이 될 우려가 있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의 철회입니다.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정부 차원의 학부모 교육 및 책임성 강화 제도 마련입니다.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상당수는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과 교육 책임의 한계를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가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 내 상담 인력만으로는 전문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 및 전문 상담 센터와 연계한 학교 밖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과제는 교육공동체 신뢰 촉진 문화 조성 및 범국민 캠페인 전개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받아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일 역시 제도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과제입니다.

## 2. 조기개입 대책 —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

두 번째 영역은 교권 침해가 발생한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열 번째 과제는 교권침해 발생 학교에 대한 긴급 교권지원의 제도화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병가나 분리 조치로 인한 수업 결손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집니다. 사건 발생 즉시 교육청이 대체 강사 파견, 긴급 심리 상담, 법률 자문단 투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열한 번째 과제는 학교 내 무단 침입이나 범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법 장비와 시설의 확충입니다. 교실 내 비상벨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위급 상황 시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112 상황실로 즉시 연결되는 긴급 신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열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학생에 대한 조기개입과 선제적 분리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교사의 판단에 따른 즉시 분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분리된 학생을 관리할 전문 인력과 공간, 그리고 외부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위탁 교육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교실의 안전이 선제적으로 확보됩니다.

### 3. 사안 대응책 — 법적·제도적 방패 마련

세 번째 영역은 교권 침해가 실제 법적 다툼으로 번졌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열세 번째 과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도입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분쟁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법무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사건 종료 시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까지 지원하고, 교원은 소송이 아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열네 번째 과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의 95%가 무혐의로 나오지만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신고한 쪽에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고성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과제는 민원 대응 주체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응 주체가 학교에 머물러 있는 한, 악성 민원은 결국 개별 교원이나 개별 학교가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됩니다.

열여섯 번째 과제는 교사위원이 없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면 개선입니다. 전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482명 중 교사위원은 7%인 252명에 불과하며,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3.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일곱 번째 과제는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전담변호사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것입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재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신속한 현장 밀착형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초기 사안 조사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열여덟 번째 과제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 제도 개선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학대로 판단한 경우 전산 시스템에 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현재의 구조는,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는 즉시 기록을 영구 삭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억울한 교원의 명예가 보호됩니다.

### 4. 중대침해 책임대책 — 엄정 대응과 사회적 경각심 환기

네 번째 영역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사회 전체가 분명한 책임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열아홉 번째 과제는 학급교체 등 중대 조치 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입니다. 상해나 폭행,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로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퇴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현재는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아, 전학을 간 학교에서조차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시 소송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학교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징계 수준의 판단은 이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관할로 이관되어 있고, 보복성 소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 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대 침해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신호를 학교 현장에 분명히 보내야 합니다. 실제로 교총이 전국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85%가 찬성했고, 교육부가 실시한 교원 및 학부모 설문에서도 교원 90%, 학부모 76.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무 번째 과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시 가중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흉기 난동 등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버스 기사나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원에 대한 폭행 역시 교육권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 5. 후속지원 대책 — 피해 교원의 복귀와 회복

다섯 번째 영역은 피해를 입은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서기까지의 회복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물한 번째 과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심리치료 비용 확충입니다. 교권 침해의 양상이 단순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과 상해, 스토킹, 악성 민원 등으로 복잡해지고 흉포해지는 가운데,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교단에 서는 교원의 부담은 결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도교육청별로 지원 횟수와 지원금 기준이 서로 다르고 실제 치료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원 기준과 금액의 상향 및 통일이 필요합니다.

스물두 번째 과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한 검찰 불송치입니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이 다시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끄는 구조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과제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입니다. 현행 제도 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지만, 피해 교원은 위원회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 교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억울한 피해 교원이 남지 않습니다.

## IV. 최근 입법·정책 동향에 대한 교총의 입장

오늘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입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변호사 선임과 심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데, 피해학생의 법적 조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원 역시 조사와 심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물세 번째 과제, 즉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과 같은 균형추가 없다면 피해학생의 권리 강화가 자칫 교원의 절차적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국교총은 이 개정안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의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 단위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한국교총은 문제 인식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 단위 조직으로는 이미 여러 부서와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통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부에는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부처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 '교육활동보호국'이, 시도교육청에는 현장 대응과 종결권을 가진 실행조직으로서의 '교육활동보호국'이 각각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설치 근거와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또는 「교권보호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교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울러 학교 단위의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V. 맺으며

오늘 기초발제와 현황보고를 통해 확인한 교육활동 침해의 실태와 정책 대응의 현황은, 이제 문제 진단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이 제안하는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은 그 제도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방과 조기개입, 사안 대응, 중대침해 책임, 후속지원이라는 다섯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방이 미흡하면 사건을 막을 수 없고, 조기개입이 늦으면 피해가 커지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후속지원이 없으면 피해는 장기화됩니다. 이 다섯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교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한다는 신뢰를 현장에 줄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선생님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늘 마련한 이 자리가 그 책무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교총도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성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02

## 상호 이해를 기반한 지지와 연대 신뢰의 학교공동체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 상호 이해를 기반한 지지와 연대 신뢰의 학교공동체



### 1 관련 법령 개선

- 현황**
- 법률적: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감 의견서 제출
  - 제도적: 지역 교권위원회, 법률 지원, 정서 지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이후

기소율 2~2.5% 이하

불기소율 97.5% 이상

- 불기소 비율이 98%에 육박하는 법 또는 신고 체계가 또 있는가?
- 불기소 과정과 이후, 당사자 모두 일상을 회복하는가?
- 한 명의 아동도, 어떤 공간에서도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원칙
- 기소건, 불기소건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필요/ 교육적 문제는 교육적으로 풀 수 있어야
- 교사-학부모, 학생 프레임이 아닌 제도 결함 차원에서 풀어야

## ② '수요자, 공급자, 교육 서비스' 이분법적 관점 제고 및 인식 개선

###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 □ 도입 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 참조: 서울시교육청 '202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편람'에서는 해당 용어 삭제)

- 5.31 교육개혁 당시, 학교자율과 자치 확대의 취지는 좋았으나 국가와 학교는 '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라는 구도,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 교육이 가진 통합적,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고려 필요.
- 현재까지 각종 공문, 교육자료, 추진계획 등에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수정 필요
-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두 어른을 이분법적으로 서게 해선 안 됨

## □ 주체 간 단절은 학교공동체 위기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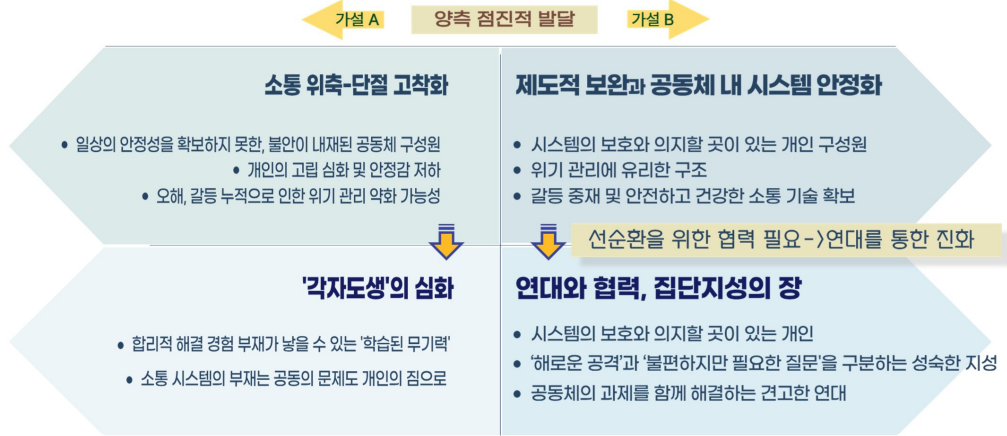
교권 5법 개정 후, 여전히 낮은 현장 체감도.  
같은 시기 학부모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면담 예약제</li> <li>• 수시상담으로 전환</li> <li>•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학부모회 활동 위축이 속히 재건되지 않는 상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이후 교사 위기와 절박함은 학부모들에게도 충격으로</li> <li>• 가정에 변화가 있는데, 상담 신청을 해도 되려나...</li> <li>• 학부모회를 통한 공식적인 소통 창구 위축으로 개별 민원은 더 늘어나기도</li> </ul> |
|--|---|

- 학교공동체 전체를 볼 때 교사, 학부모 모두 위축된 상황
- 교권 침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모두 어려운 상황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는 단절은 더 큰 위기로 이어져

□ 공동체의 두 가지 발전 시나리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학교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3 상호이해를 기반한 신뢰의 학교공동체



9.4 공교육 멈춤의 날



**주요 연구 1.**  
일시 재휴업일에 지원하면 일시 돌봄, 교과, 교직원 선별(특히) 지원해 주기로 예상이나 그날따라 모든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나와 것 같아 학부모들께서도 동참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주유 센터에도 돌봄 수혜자에게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구 2.**  
특히 재휴업일 지원이 안 된 단 1만 가정에 (이는 자과) 함께 참여 할 경우나 재휴업일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9월 4일 재휴업일 신청서 제출 시도를 성공적 정정제를 위한 종교적 영감을 남긴 경우가 있고 지원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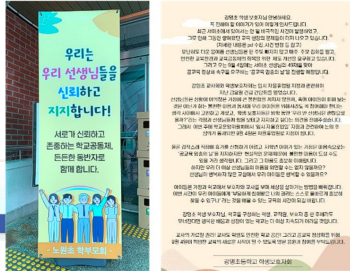
광명초등학교 학생보호지원

**9.4 재휴업일에 해밀초 학부모 86% 찬성.. 학부모가 나섰다**  
학부모회에서 직접적으로 물음표가 많음... '재휴업일 지원' 시선도 바래

세종시에 위치한 해밀초는 최근 9월4일을 재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의 학부모가 지지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재휴업일 취지와 의미에 대해 미리 이해를 구한 것도 있지만,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컸다.

학부모들은 단순히 지지 의사를 밝힌 것에 그치지 않고, 9월4일 교사들의 빈자리를 스스로 메우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다. 학부모회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영 화관람', '일본요리체험', '보드게임' 등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 9월4일 학생들의 돌봄에 차질없는 준비를 마쳤다.

교육연론장/23.08.26 14:42



### 3 상호이해를 기반한 신뢰의 학교공동체



다양한 인격체가 모인 '학교'는 모든 요소가 유기적·복합적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구조적 업그레이드

#### 공동과제 및 특징

- 학생(학부모) 선발 절차 없음.
- 보편적인 순환근무(일부 초빙교사제 가능)가 적용되는 공립 학교
- [학교운영혁신, 수업-평가 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3대 과제를 운영
-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동학년 협의회 활성화로 공동 수업 연구, 위기 공동 관리
- 초기 중요과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구축
- 최근 과제: 기초학력 지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
- 4년 지정 기간 동안의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자체평가
-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 교사회(교직원)의 민주적 운영 발달
- 3주체 협의회, 3주제 공동체 생활약속 등 정례화
- (년차별 차이는 있으나)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이 현저히 낮은경향이 있음.

\* 학교간 운영 차이 있음.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 선순환 구조  
과정에서의 이해와 두터운 신뢰 형성

토론  
03교권침해 그 후, 다시 수업자로 서기까지:  
교육공동체 기반 회복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언<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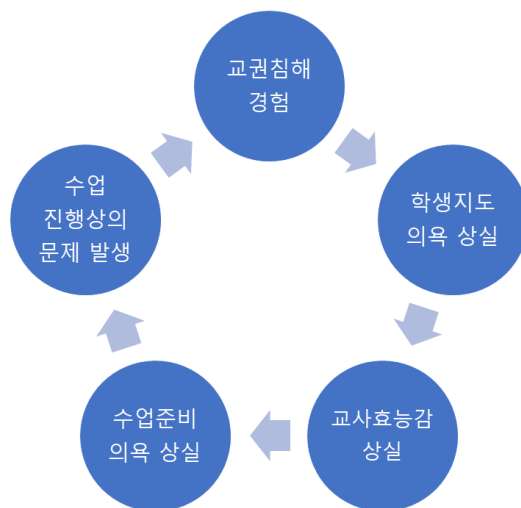
장세린 (금구초등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

## 1. 교권침해 피해교사의 회복 및 성장 과정

준석이의 담임이 아니었던 나는 주당 5시간 동안 주어진 준석이와의 전담 수업을 무난하게 메꾸는 것에만 골몰하게 되었다. 이번 한 해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도 학급편성 때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나의 목표는 사고 없이 1년을 버티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에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는 안 됐다. 수업의 방향이 다양해질수록 준석이의 행동이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점 나의 수업은 학생 활동 중심의 유기적 수업에서 교사 중심의 단조로운 수업이 되어갔다. 혹은 교육적 의의나 효과는 전혀 없이 학생의 흥미만을 충족시키는 무의미한 수업이 되기도 했다.

오늘은 도저히 그 아이에게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술 시간에 공작키트 하나씩 나눠주고 영화 보여줬다. 그래도 이만하면 두 시간 잘 버텼다. (교단일지, 2019. 10. 25)

학생들이 시간 때우기 식의 수업을 몰랐을 리 없었다. 수업을 포기한 나는 자연스럽게 교사로서의 권위마저 잃어갔다.



[그림 1]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 구조화

1) 이 토론문은 “장세린, 정윤경(2021). 교권침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7(3), 231-265”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회복은 개인이 마음을 다잡거나 치유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는 학생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특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교권침해는 한 번의 사건을 넘어 교사의 불안과 위축, 수업 의욕 저하, 학생지도 포기, 다시 수업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교사가 “다음 시간만 무사히 넘기자”는 생각으로 교육활동을 최소화하게 되면, 결국 교사 자신의 전문성과 권위가 흔들림과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교권침해 대책의 최종 목적은 피해교사가 다시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 있는 중재이다. 둘째,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동료교사들의 연대이다. 셋째, 수업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분리와 지원 체계이다.

### 1) ‘권한이 있는 리더’의 중재와 변혁적 리더십

관리자: 그 어머니가 화난 상태로 올 테니까, 일단 급선무는 장 선생을 보호하는 거지. 학부모를 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 세워둔 대원칙이 뭐냐하면 절대로 장 선생과 대면하게 하지 않는다. 얼굴은 당연히 안 보여줘야 하고, 장 선생의 신원이 일절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혹시 모르니까.  
(관리자와의 대화, 개인적 기억 자료)

분노에 찬 학부모와 직접 대면했다라면 교육권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당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을 학부모가 돌아간 후에야 들었다. 나는 관리자의 대처에 큰 감동을 받았다. 관리자가 자신이 편한 방법이 아닌, 나를 위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학부모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냄으로써 나를 보호했다. 학교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피해교사가 학부모를 직접 대면할 경우 갈등만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때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으면, 교사는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연구자: 오늘도 준석이 부모님께서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셨대요.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관리자와의 약속이면, 그래도 취소하긴 어려우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서 교사: ...그럴 수 있지. 그 쪽 입장에서는.

연구자: 왜요?

서 교사: 준석이 부모님께는 준석이가 너무 예쁜 자식이거든. 학부모 상담 할 때도 아이가 머리가 좋다, 한글도 혼자 깨쳤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셨고. 준석이가 뭘 하든 절대 혼을 안 내셔. 그렇게 예쁘고 귀한 아들인데, 작년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까지 열렸으니...

연구자: 학폭은 어쩌다 열렸는데요?

서 교사: 그건 준석이가 정말 잘못된게 맞았어. 하지만 이전 관리자님께서 무조건 문서부터 찾으셨거든. 학교폭력이던 뭐던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담당자 불러다 놓고 조사서 만들어라,

기안부터 해라... 그래서 학폭 담당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다 준석이가 가해자로 남는 기록들이잖아. 당시 관리자께서는 기록을 남겨놔야 학교가 다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셨는데, 문제는 그래서 준석이 부모님이 그간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애한테만 낙인을 찍는다고 생각한거지.

연구자: 작년 선생님들께서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서 교사: 어유, 말도 마. 나는 수업 도중에 준석이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준석이 데리고 나가버린 적도 있어. 이런 학교 필요 없고 우리 애는 전학 보낸다면서... 그런데 쉽지 않았는지 다시 보내시더라고. (동료 교사와의 대화, 개인적 기억 자료)

나와 준석이의 갈등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생긴 일이었지만, 준석이의 부모에게는 N년간 쌓아온 감정이 있었다.

그러나 중재자 역할은 단순히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위원회를 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는 절차가 많아질수록 피해교사에게 추가적인 진술, 문서 작성, 회의 참석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 역시 학교가 아이를 낙인찍거나 처벌하려 한다고 느낄 수 있다. 기록과 절차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학부모와의 관계회복은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리자: 얼마 전에 교원지위법이 개정됐잖아. 그래서 내가 학부모 오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놨지. 그래서 어머님 앞에 교원지위법 인쇄해 놓은 것을 딱 놓고,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조심스럽게 바뀌면서, 특별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연구자: 대화 흐름에 변화가 생겼겠네요.

관리자: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특별교육은 내가 직접 애를 지도하는 거라고. 수업도 안 듣고 그러면 따로 불러내서 책이라도 읽히고, 수학 문제라도 풀리고, 아무튼 나는 진짜로 할 생각이 있다... 나중에는 자기 애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 아이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애가 우리 말을 듣는다. 그랬더니 한대. 그 길로 준석이를 데려오라고 했지. 준석도 막상 자기 엄마가 나한테 고개 숙이는 걸 보니까, 애 눈가가 축축해지는 거라. (관리자와의 대화, 개인적 기억 자료)

한편 관리자가 학부모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상호 간의 대화가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도했다. 학교가 학생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중재자는 감정이 격앙된 학부모와 교사가 즉시 대면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가 공식 창구가 되어 학부모와 소통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의 문제행동이 왜 반복되는지, 가정과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개입할 수 있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당신이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학부모에게는 학교가 단순히 처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개입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관리자: 장 선생님, 준석이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준석아: ...

관리자: 준석아, 우리 선생님께 사과 드리기로 했잖아.

준석아: ....죄송...

관리자: 죄송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야지.

준석아: ...죄송합니....

연구자: 그래, 준석아. 앞으로 선생님이랑 남은 수업 잘 보내보자.

관리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이며) 우리 준석이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관리자와의 대화, 개인적 기억자료)

준석이의 자발적인 사과를 이끌어 낸 것도 대단했으나, 나는 나에게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하는 관리자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나를 높일 요량이었을 것이다. 준석이의 어머니는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나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으니 준석이로 하여금 '장 선생님은 함부로 하면 안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듯 하다.

## 2) 리더를 믿는 동료교사들의 탄탄한 연대

그들의 교권침해 경험은 단순히 재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나의 교권침해 경험은 신규교사의 열정과 꿈을 꺾는 것이므로 선배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관리자(B)가 바뀌었다는 환경의 변화도 크게 작용했다. '어차피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 파편화되었던 교사들의 연대가 다시 생성되었다. 바뀐 관리자(B)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교사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연대하게 만든 것이다. 동료교사들은 모두 나를 위로하며 내 편이 되어주었고, 소극적인 관리자(A)를 압박하여 교권침해 사안을 공론화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고 연대해 주었다.

오 교사: 관리자(A)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준석이가 과학실에 남아 장 선생님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바람에 저희 반 아이들까지 과학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학년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나 교사: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반 연두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준석이가 연두를 너무 괴롭힌다고, 연두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랬대요. 얼른 학교에서 뭐라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서 교사: 개 때문에 전학 간 학생이 지금 몇 명이예요. 이건 다른 애들한테도 못할 짓이예요.

육 교사: 더 이상 그 애 하나 때문에 학교가 끌려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한번은 공식적으로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수업중이었는데도 아무도 교실로 돌아가지 않은 채 관리자를 바라본다)

관리자(A): (망설이다가) ...그래. 이러다 준석이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전학 가게 생겼구만. 관리자(B)님께 말씀드리고 다 같이 한번 해결해보세. 내가 출장 가 계신 관리자(B)님께 연락을 드리겠네. (교권침해 공론화 직후 동료 교사들의 대화, 개인적 기억 자료)

따라서 교권침해 대응은 교사 개인의 민원이나 고충 처리 방식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공동 대응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특정 학생의 문제행동이 한 교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실과 여러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교사들이 사례를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과전담·상담교사·관리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역할을 나누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동료교사들의 연대는 ‘서로 잘 도와주자’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사들이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도 과도한 업무나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 3) 즉각분리와 수업지원을 통한 전문성 회복

준석이의 사과를 받은 후, 나는 전처럼 수업 준비를 성실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정서적 안정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관리자는 나의 수업 진행에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

관리자: 아무리 준석이가 제 입으로 사과했어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야.

연구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수업이 문제인데...

관리자: 또 수업 방해를 한다 싶으면 바로 교장실로 보내. 내가 맡아줄 테니까.

연구자: 네? 그래도 돼요?

관리자: 여기서 재우든, 책을 읽히든, 하여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학년에 다른 애들도 수업은 들어야 할 것 아니야. 다른 애들은 또 무슨 죄겠어. (관리자와의 대화, 개인적 기억자료)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관리자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학교의 무법자였던 준석이는 처음으로 하기 싫은 것이 생겼다. 물론 ‘수업을 방해하면 교장실에 보내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수업 방해를 멈추지는 않았다. 때로는 교장실로 가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망설임 없이 관리자를 호출했다. 즉각 달려온 관리자가 전담실 뒷편에서 준석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문제 행동은 어느 정도 잦아들곤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을 준비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수업 방해 때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수업은 훨씬 모험적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언제 관리자를 호출할지 몰랐고, 언제든 관리자에게 나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기도 했다. 수업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점차 능동적으로 수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교권침해 대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업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많은 교권침해가 수업방해,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갈등, 규칙 위반 지적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교사의 회복도 결국 교사가 다시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이 있을 때 교사에게 ‘잘 지도해 보라’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보일 때, 교사가 호출하면 지원 인력이 곧바로 와서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뜻이다.

즉각분리 체계가 마련되면 교사는 수업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안전감을 느낀다. 이 안전감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수업의 질과 직접 연결된다. 교사는 방해 행동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소극적인 수업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 참여 활동이나 다양한 교수법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학교의 보호를 받았기에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관리자가 학부모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준 일은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나는 더듬학생 지도 연수에서 불현듯 준석이를 떠올렸다. 교권침해 사건 이후 거의 처음으로 준석이의 수업시간을 상상해 본 날이었다.

연수자: 선생님들, 문제학생들은 보통 학습더듬인 경우를 많이 보시죠? 이럴 때 어떤 해결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학습더듬 해소와 인성교육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할까요?

교사들: ...

연수자: 저는 학습더듬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도 앉아서 몇 시간동안 모르는 이야기만 듣다가 가는 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수업 한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닐까요? 모든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앞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2020 국어과 기초학력 연수에서, 개인적 기억자료)

준석이는 내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그제야 비로소 준석이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물론, 수업내용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교권침해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수업이 준석이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는 자각은 그 이후로도 나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리 이후의 지원이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 분리된 학생에게는 상담, 학습지원, 행동중재, 보호자와의 협의 등 후속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학습결손, 정서적 어려움, 가정환경, 또래관계, 의학적 문제 등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훈계나 처벌보다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교권침해 대책의 최종 목표는 학생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피해교사가 다시 교사로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문제학생 역시 교육적 관계 속에서 변화할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데 있다. 교권 회복은 교사의 권위만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수업과 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2. 제언

### 1) 제도 개선의 핵심: ‘권한이 있는 자의 중재’ 기반 마련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권국 신설과 같은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물론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피해교사와 학생·학부모가 감정적으로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 분리하고,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문서를 정리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즉각 분리, 수업지원 인력 투입, 학부모 상담과 관계 조정,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실제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권보호관이든 학교 관리자인든,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학생 분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는 피해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우선 보호하는 동시에, 문제학생에게도 상담·학습지원·행동중재·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교육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관계 역시 단순히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적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 가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권한 있는 중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민원, 갈등, 법적 책임의 위험을 또 홀로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그 권한을 교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조직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개입할지, 개입할 사람을 교육청과 법·제도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관련해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교육청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2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이른바 ‘교육청 책임소송제’와 ‘교권침해 시 교육청의 보험사 역할’은, 교사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육청이 신고 접수 이후 대응을 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상한 것이다. 이는 법리적 대응의 책임을 담임교사나 학교 관리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2) 법률 개선의 핵심 -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합적인 교육·돌봄·관계의 문제를 지나치게 급히 형사적·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옮겨 버린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한계를 보인다. 다양한 맥락을 가진 문제를 하나의 법적 프레임 안에서 처리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도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생긴다.

교권침해의 경우,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특수폭행, 상해, 성범죄 등 사실상 형사사건에 가까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교권침해’라는 행정적 범주 안에만 묶어 사안의 심각성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다툼이나 미성숙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절차로 들어가면, 학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다투는 공간이 된다. 법률 개선을 이러한 양극단을 함께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아동복지법 개정의 방향

교사의 아동학대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현재의 방향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교사가 명백한 폭력·학대의 의도 아래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혹은 그에 버금가는 고통을 가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당연히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생활지도와 훈육의 문제까지 아동학대의 틀로 판단하는 것은 교육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다. 훈육은 본질적으로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제한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과제를 억지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수업 참여를 요구하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며, 규칙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학생의 당장의 선택이나 감정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불쾌감·불편함·좌절을 느꼈는지, 또는 어떤 자유 혹은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지가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의도, 지도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육적 목적 아래 학생의 성장과 안전,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통상적 생활지도라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불편함이나 제한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아동학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법적 정의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동 관련 직역 종사자들이 악의적 신고의 위험 속에서 생활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학생 역시 방임이 아닌 책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의 핵심은 실제로 가정 내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학대를 겪는 아동, 즉시 분리와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아동에게 국가의 개입과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복지 제도는 실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체계로 강화되어야 한다.

##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방향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현장에서 학생 간의 일회적 다툼, 감정적 충돌, 상호 언쟁마저 학교폭력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괴롭힘 피해자가 오히려 ‘쌍방’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의대로라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어느 날 반발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때, 가해 학생이 그 장면만 문제 삼아 ‘맞푼’을 걸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신이 겪어 온 지속적 괴롭힘보다 특정 순간의 반응에 대해 해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학교폭력 절차가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아닌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장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지난 6월 16일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 발의)’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상담·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 신청,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심의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처럼 학교폭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쌍방 신고가 빈번한 체계 안에서 본 제도가 추가된다면, 학교폭력 해결은 ‘누가 먼저 피해자를 자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의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속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반응한 장면만을 근거로 가해 측이 역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만 변호사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강조되면 상대방은 더더욱이나 ‘나 역시 피해자였다’는 논리로 맞푼과 법률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과 보호자는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학교는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다투는 준사법적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판단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더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격하기 어려웠는가. 셋째, 특정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어졌는가이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일회적인 장난과 다툼, 상호적인 갈등, 지속적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다.

토론  
04

##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토론

김은혜 (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정과자녀수호협회 공동대표 김은혜입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이 3주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 세계인권선언 제29조(개인의 의무와 권리 제한의 조건)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사회를 향한 책임).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를 위한 정당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정한 제한을 받는다(내 맘대로 다 할 수는 없다).

### 세계인권선언 30조(권리 남용 금지)

이 선언의 어떠한 조항도 본 선언에 천명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어떠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인권을 핑계 삼아 남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그러나 지금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으로 치달으며 사회의 혼란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학교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훈육하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돕는 '교육적 기능'이 우선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기능이 무너지면서 사법화 경향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학생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나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이 난무하는 상황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강조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통제 수단도 부재합니다. 그로 인해 수업분위기가 붕괴되고 면학 분위기는 상실되었습니다. 학부모는 권리만 있고 배려와 책임은 없는 학생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큼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들을 과잉보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해주는 것이 깨어있는 부모와 학교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고, 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이를 뒷받침하게 되면서 부모와 교사 학생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와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유형이 광범위하기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을 부모와 교사는 없습니다.

과도한 아동보호가 장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과잉 보호가 일상이 되어 아이들의 도덕적 회복 탄력성을 훼손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배울 기회를 전면 차단하여 아이가 심리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준이 없는 민원 대응으로 인해 교사 선생님들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 방어적으로 방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시험도 없애고, 반장도 뽑지 않고, 공개수업도 하지 않고, 체험학습도 안 가고, 상담기간도 없앴)으로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도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915조 징계권이 삭제됨으로 인해 부모도 아동학대로 많이 신고되어 가정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카페/나는부모다협회/부모따돌림방지협회 등의 카페와 시민단체 원가정인권보호 연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4년 2월 26일부터 2026년 6월 11일까지 129명이 활동 중인 아동학대 처벌(특례)법피해자응급/SOS카페는 자녀와 학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고통을 겪었다는 응답이 129명 중 80명인 62.2%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법은 이혼에도 악용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받으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도 6.98%인 만큼 적지 않은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웃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상당하며(아래 윗집 소음 다툼으로 인한 신고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 신고 중심의 아동 학대 처벌(특례)법 불명확성으로 의심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가운데 부모는 신고만 되면 법적, 행정적 절차가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시에,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으로 출입해서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집안으로 진입해 아동과 부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거부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

부모의 동의 없이 72시간 임시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시 보호시설로 분리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에는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또는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이메일,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 아동 보호 명령”으로 친권이나 양육권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명령”만으로도 부모가 거부해도 법원 권한으로 아동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져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건이 일단락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최소 몇 개월 동안 해당 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또 아동을 다시 신고 및 분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며, 아이와 온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제가 여기 위 클래스(Wee-We Education Emotion)를 언급한 이유는 아동을 상담하고 아이들의 심리를 보살피 준다고 하면서 현장에서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부모는 아이들을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1〉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부모가 학원을 보냈다고 상담교사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몇 개월 동안 아이와 분리되는 과정을 겪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가정

〈상담사례 2〉 아이가 자꾸 모르는 성인 남자와 채팅을 하고 만남을 하려는 것을 저지했다가 상담교사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당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및 상담명령 등(최대 500시간)을 받아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7살 때 어른 운동기구가 있는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가 어른 운동기구를 보고 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잘 보살피며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보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가 와서 아이에게 맞지 않는 운동기구를 태웠다면 아동학대라고 했습니다. 그 운동기구에는 “아이가 이용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보호자도 없이 와서 그 운동기구를 타고 놀면서 저한테는 아동학대를 했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줌마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고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 절차가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아원 같은 아동보호시설에 가서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아동학대 예방 시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아동학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교사이면서 부모입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교사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학교폭력 잔혹사라고 불릴 만큼 학교에서 웃지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진술서와 신고한 아이와 분리가 되어 학교폭력 전담교사와 상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면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중1인데 아이가 다른 일로 웃었는데 상대방 아이로부터 자기를 무시했다고 신고가 되어 즉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분리되고, 학교폭력 전담교사와 전담조사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벼운 사례를 들었지만 조금만 신체 폭행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 ‘학폭 가해자’ 생활기록부에 낙인찍히면 억울함은 뒷전이고 기록을 막아야 하는 절박함에 사로잡혀서 대학에 붙어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대입 정시 등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폭 이력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반성, 회복보다는 신고, 학폭 맞신고가 동반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겁이 되는 신고 만능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의 사법화(학교 안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가 교육적인 대화나 지도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 신고, 고소고발, 법적 소송 등 ‘사법 기관의 판단’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현상)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웃지도, 이야기하지도 놀지도 못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 고등학교는 홈스쿨링을 고민할 정도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퇴 폭발 56% 1만 450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자퇴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가 자정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만의 책임도 가정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와 가정이 각자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학교와 가정이 대립이 아닌 서로 상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면책 특권만이 법제화 된다면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없어 학교를 떠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도하게 행동해도 하소연할 곳도, 바로잡을 방법도 없다고 느끼게 됨)심한 경우 학급 수 감축과 학교가 문을 닫는(폐교)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기존의 편향된 권리 강조는 교실과 가정 내 통제 불능 현상과 정당한 사회적 규범 학습이 배제되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폐지, 수정을 통해 학생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성을 비례적으로 명문화하고, 교사와 부모의 지도권을 회복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완화(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한 법적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었지만, 정작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이 과도한 훈육(학대)인지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처벌이 강화된 반면, 교사는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까지 이르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100명 중 1~2명).

엄벌 위주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모는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이어져 1차 55%, 2차 30~40%, 3차 15%~20%에 가까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생활지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법화'를 막고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신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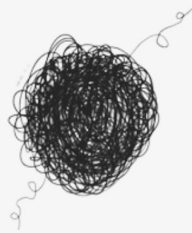
## 교육활동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행정업무 분리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교육활동보호 강화

## 아동복지법 개정/ 행정업무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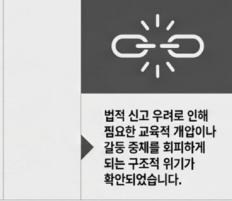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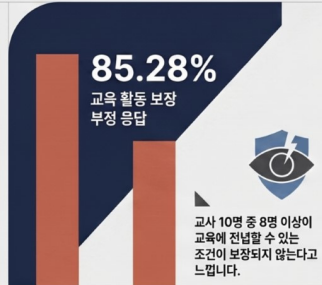
적성자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이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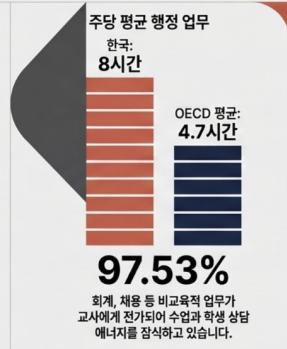
실마리는 감겨있는 실타래의 첫머리를 뜻한다.  
아무리 바빠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빠져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

# 위기의 대한민국 교사: “우리는 지금 교육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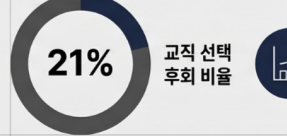
## 무너진 교육권과 법적 불안



## 교육을 압도하는 행정 업무와 직무 현실



OECD 평균(4.7시간)보다 보통이 높으며,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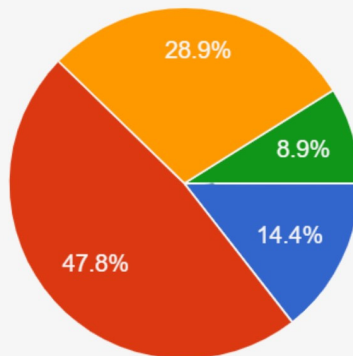


한국 교사들의 교직 후회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

근무학교급

응답 90개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

근무학교급

응답 90개



##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

### 동료에게 건네고 싶은 말

스스로 삶을 저버린 선생님들은 약해서가 아님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조심하세요 표정도 조심하시고 한마디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교직을 수행해야하나요...

이젠 학부모가 기분 나쁘면 사건 조작도 가능해요. 교사 보호가 절실합니다. 아님 입다물고 정년까지 기다려야죠. 명퇴 하던가

아동학대 정말 조심하세요 표정도 조심하시고 한마디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교직을 수행해야하나요...

저는 이런 일을 24년의 경력을 가진 제가 겪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교사가 이 일을 당했다면 어찌 4개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저 짝짝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살아내었습니다

## 무혐의와 기각에도 끝없이 반복되는 보복성 재고소

2026년 전교조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 사례 중

1.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절차에 맞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실시함.  
[결과]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교사 교체를 요구하다 아동학대로 신고함. 경찰 무혐의 및 항고 기각,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국회 및 교육청 민원 제기에 이어 다른 사안으로 아동학대 재고소와 재정 신청을 반복하며 1년 넘게 괴롭힘.
2. [부산] 학부모로부터 단호한 지도를 요구받은 신규교사가 수업 중 단호하게 착석 지도를 함. 학부모가 아이 옷에 몰래 넣은 불법 녹음기를 근거로 '낙인 효과를 준 정서 학대'라며 아동학대 신고함. 무혐의가 나오자 2차 아동학대 신고를 해 교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
3. [충북] 기물을 파손하고 교사의 목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6학년 학생의 위험 행동을 제지함. 제지 과정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함.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가해 학생은 봉사 10시간에 그쳤고, 학교 관리자는 도리어 교사에게 학부모 측에 과일바구니를 주며 무마할 것을 종용함.

## 무혐의와 기각에도 끝없이 반복되는 보복성 재고소

2026년 전교조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 사례 중

4. [충남] 학생에게 교실 쓰레기를 줍게 하는 등 교실 내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함.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함. 2차에 걸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재정신청, 명예훼손 고소, 5천만 원의 민사소송까지 연달아 제기함.
5. [경기] 180cm가 넘는 체격 큰 학생이 고의로 교사에게 부딪힌 후 사과 지시를 무시하고 도망가려 하여 제지함. 정당한 훈육을 위해 도망가는 학생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즉각 신고함.
6. [인천] 영어 수행평가 중 교실 문을 잠그고 교사의 출입을 방해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거둬 부르고 필사를 지시함. 이에 대한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아님' 결정이 난 후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가 2차례 이어짐. 경찰 보안 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되어 교사는 현재 휴직 상태로 고통받고 있음.
7. [서울] 결석한 학생에게 학교에 오라고 독려하고, 주말에 공부하라고 메신저로 연락함. 이를 아동학대라며 6차례나 고소·고발함. 수사기관에서 전건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받았음.

### 무혐의와 기각에도 끝없이 반복되는 보복성 재고소

2026년 전교조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 사례 중

8. [경기] 학교 규정에 어긋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고 올바르게 지도함. 학부모로부터 즉각 아동학대로 신고당함. 교사가 정당한 절차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자, 학부모는 보복 목적으로 해당 학교 교사들을 무더기로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 하며 행정 테러를 가함.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됨
9. [울산] 수업 중 학생들끼리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안전하게 말리며 제지함. 흥분한 학생이 교사에게 맞았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했고, 이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발함. 모든 기관에서 명백한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7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항고함.
10. [부산] 성추행으로 강제전학까지 당한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당함. 해당 학생이 첫 학교폭력 신고 당했을 때 피해학부모 상담하고 자체해결도 시킴. 그러나 학생을 위해 진심으로 상담하고 조언했는데 2차 학폭위의 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함. 무혐의 이후에 항고-재정신청-민사까지 이어져 2년 5개월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최근 아동학대 무고로 인한 피해 사례들의 시사점

- 교육활동에 현행 정서학대와 방임을 적용하는 한 백약이 무효
- 문제의 핵심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절차적 처벌
-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겨울을 사는 교사가 참다운 배움이 싹트는 교실을 만들 수 없다.

## 실마리 1 아동복지법 개정

### 「2024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5.8/보건복지부)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사건처리(고소·고발)	계
24,492	22,068	536	10,961	47,096
(52.0)	(46.9)	(1.1)	(44.8)	(100.0)

### 사례판단 통계 중 학교와 교원

구분	유치원/학교	유.초.중.고교직원
비율(%)	3.5	2.7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학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비율과 유치원 및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 비율이다.

특히 위중한 아동학대로 판단할 때 척도가 되는 ‘재학대’로 좁혀 살펴보면 보면 교직원은 단 경우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본 자료에는 국가가 긴급히 개입해야 하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역시 학교와 교원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서이초 이후 교권 5법 어떻게 작동하는가?

### 1. '정당한 생활지도'로 제출된 교육감 의견

구분	교육감 의견 제출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없음 또는 기타
건수	1,023	416
비율	71%	29%

#### ※ 정당한 생활지도의 판단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학칙(유치원규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②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 ③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 제출된 1,023건에 대한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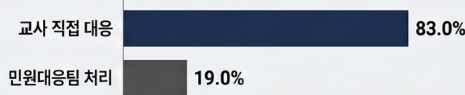
경찰 수사 현황 건수		「정당한 생활지도」로 제출된 건수 기준					계	
진행중	수사 개시 전 종료	검찰 결정 현황 건수			아동보호사 건처리	기소		기타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각 하 등	기소유예					
349	166	428	12	34	17	17	1,023	

교원의 조치에 대해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공식 의견을 제출한 1,023건중,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안은 16.2%(166건)에 그침.

• 참고 : 민원 대응 시스템은?  
**[실태조사]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제도는 구축되었으나 현장은 여전히 ‘교사 홀로 감당’**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한계**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 대상 실태조사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2.77%의  
 공신력을 확보한 조사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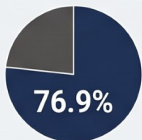


제도 구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사가  
 여전히 민원에 직접 노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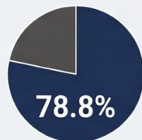


학교 현장에서의 공식적인 제도 안내와  
 정착 시도가 미진함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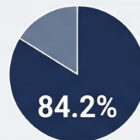
**정책 실효성 부정 평가 및 교사 피해 실태**



**현장 교사  
 “정부 대책의 보호 효과 없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 심리적 고통 경험**  
 민원 대응 과정에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소신 위축이 심각합니다.



**교사 교육활동 위축 경험**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  
 정해진 절차 미준수**  
 보호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 NotebookLM

**통계 자료 훑아보기**

실제로 재판(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5%(17건)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7.5%  
 가 넘는 절대다수의 교사는 무혐의를 받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동안  
 고통스러운 수사 절차를 견뎌야 한다.

그럼 이 2.5%에서 교사들이 실제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몇 퍼센트일  
 까? 나아가 교사들이 주로 무고를 당하는 정서학대와 방임은 몇 퍼센트 일까? 교각  
 살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실제 형사처벌까 내려지는 경우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이 아니  
 더라도 아동학대법에 나열되어 있는 50여개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명확한 교육법으로 규율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p><b>제17조(금지행위)</b> 누구든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b>정서적 학대행위</b></p> <p>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b>방임행위</b></p>	<p><b>제17조(금지행위)</b> ② 제1항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및 제6호(방임행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u>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u> 한다.</p> <p>이 경우 생활지도의 기준·범위 및 금지행위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u>적용한다</u>.</p>

정서학대와 방임은 명확한 교육법으로 규율

<초·중등교육법>

현행	개정(안)
(신설)	<p><b>제20조의2(학생생활지도)</b>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u>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벌 등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li> <li>2. 욕설·폭언으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li> <li>3.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li> <li>4.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행위</li> <li>5. 기타 법률로 금지된 행위</li> </ol>

\*유아교육법도 동일한 조문으로 개정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및 제6호(방임행위)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학대로 신고되고, 신고만으로 교원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합동 수사와 조사 절차에 노출되어 학교 교육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두 조항에 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본 개정안은 교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상해, 폭행,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및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 「아동학대처벌법」 및 「형법」에 명시된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엄격한 사법적 처벌이 적용된다. 사법 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역시 엄중한 행정징계가 내려진다.

다만, 현재처럼 단순 신고만으로 교사가 즉시 피의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 조사를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생활기록부 수정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성찰문을 쓰게 했다고, 더운날 체육활동을 했다고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신고하면 곧바로 아동학대 수사가 개시되고 학생들과 분리되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래야 다수의 학습권도, 교육공동체성 회복도 가능하다.

## 악성민원 피해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책 대안

### 1. 수사와 소송의 굴레에 빠진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지원(현행)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 수사 또는 소송에 대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수사기관·법원 등 관계기관 대응, 자료 작성·제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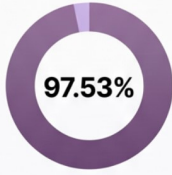
### 2.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보호·회복 조치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 중인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학생·보호자와의 직접 접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특별연수·파견 등 보호·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

### 3. 법적 제재 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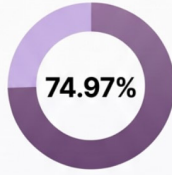
보호자 등이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행기한, 이행명령, 단계적 과태료 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 아동학대 무고가 확정될 경우 교보위 의무 개최, 무고죄 형사고발 등 조치 검토

### 마비된 교실: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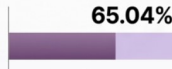
행정업무가 교육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회계, 채용, 시설 관리 등 교육과 무관한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면서 학생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비교육적 행정업무 '교사 부과 금지' 필요

시설·채용·회계 등 본질적으로 학교 행정의 영역인 업무들을 교사 직무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면 이관'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니라,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성명서]

**교권 보호 최우선 과제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즉시 대책 마련하라!**

부여 A학교 행정업무 갈등 해결 위해  
교육과 행정업무를 구분한 지침 시행하라!

## 40년 '경감' 정책의 실패와 교육의 위기

40년간 반복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한계

1979년 문교부의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 이후 40여 년간 교육 당국의 일관된 기조는 행정업무 '감축'이었음.

국무회의(2026.4.28.) 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모든 교육감들의 공약에 포함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사로부터 시설 채용 회계 업무의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교조의 질의서에 답한 43명의 후보들 중 2명만 긍정 검토이고 41명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옴.

**그러면 이제 진짜 행정업무 경감과 분리는 가능한걸까?**

## 점점 늘어나는 행정업무 부담

OECD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ALIS 2024):한국 교사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은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이며, 2018년 대비 약 10% 증가함.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지난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시간은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나, 그중 상당 시간이 교육활동이 아닌 문서 생산과 행정 보고에 낭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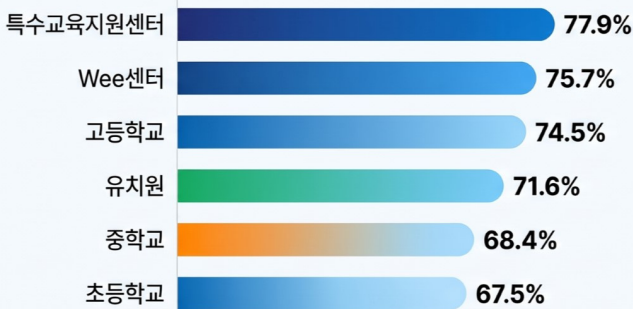
각종 설문조사에서 교직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이 지목됨.

## 학교급별 교무학사 실태: 교육보다 무거운 '비본질적 행정업무'

전국 17개 시도 교육기관의 업무분장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회계, 채용, 시설 관리 등 비본질적 행정 사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학교급별 비본질적 행정업무 비중

### 교육기관 전체 평균 70% 내외의 압도적 행정 업무율



교사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정 업무의 실상

### 교육 전문가를 '행정 소모품'으로 만드는 구조적 모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대신 예산 정산, 강사 채용, 시설 보수에 교사의 에너지가 매몰됨.

### 본연의 업무 집중을 위한 '업무 정상화' 시급

회계는 행정실로, 채용은 지원청으로, 시설은 전문 인력으로 이관하는 구조적 대전환 필요.

출처: 전교조 조사결과

## [실태 보고] 교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현실: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정 부담

2026년 4월 기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 활동 외에 시설 관리, 채용, 회계 등 과도한 행정 업무로 교육 질 저하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 [유치원] 교육을 가로막는 행정의 벽

**93.1%** 유치원 교사, “시설·채용·회계 업무 직접 수행”  
최근 5년 이내에 교육 활동과 무관한 행정 업무 경험

시설 보안 및 안전 점검 (58.7%)	방학 중 및 기간제 인력 관리 (50.6%)	유아학비 예산 편성 및 정산 (49.4%)
-----------------------	--------------------------	-------------------------

#### 현장 사례

- “업체 선정부터 맘카페 구인 홍보까지”  
(직접 사비 구인 광고, 에어컨 모델명 전수 조사, 놀이터 공사 견적 산출 등)
- “행정실장과의 갈등과 전문성 부족의 한계”  
(유아학비 정산 위해 방학 반납,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실 면박 견디며 극심한 스트레스)

### [초등학교] 행정 지원 인프라의 부재

**79%** 초등교사, “행정 업무 분담 경험”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약 79%의 교사가 수업 외 행정 업무 고정 수행

학교 보안 및 안전 인프라 관리 (47.0%)	공모사업 회계 관리 (40.6%)	지원 인력 위촉 및 관리 (39.6%)
---------------------------	--------------------	-----------------------

#### 현장 사례

- “컴퓨터 500대 전수 조사와 인테리어 회의”  
(수백 대 기기 전자태그 확인, 특수학급 증설 시 인테리어 업자와 실무 회의 진행)
- “채용 공고문 작성부터 인건비 산출까지”  
(기간제 실무사 및 외부 감사 채용 전 과정, 단순 기간 부터 주휴수당 등 복잡한 인건비 계산까지 떠맡음)

출처: 2026년 4월 전교조 Notebook

## 중·고교 및 센터 교사 행정업무 실태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권 침해 현황

### 중학교 행정업무 실태

**중학교 교사 65%, 5년 이내 행정업무 분담 경험**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 활동과 분리되어야 할 행정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3대 핵심 요인

- 정보화 기기 및 방송 설비 관리 (37.7%)  
정보화 기기 및 방송 설비 관리, 분리되어야 할 경찰의 업무무를 작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제 교원 및 지원인력 관리 (40.7%)  
계약제 교원 및 지원인력 관리 분리되어야 할 행정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산 및 공모사업 회계 관리 (40.6%)  
회계적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행정업무 실태 및 현장 사례

**고등학교 교사 70%, 행정업무 경험으로 교육 부담 가중**

중학교보다 높은 비율로 행정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 및 복무 관리(51.1%)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 “수업 대신 시설 관리와 수사 협조에 동원되는 현실”

- 1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 사업 전담이나 수업 중 경찰의 CCTV 열람 요청 협조 등 교사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가 강요됩니다.

#### “강사 섭외부터 미납금 독촉까지 교사의 몫”

- 강사 채용을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교복비 미납 학부모에게 독촉 전화를 하거나 분실 교과서 대금을 사비로 변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실태

**센터 근무 교사 96.4% “업무 과중하다” 응답**

거의 모든 센터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행정직 부재로 본연의 상담·교육 업무 포기”

- “연수도 받지 못한 채 회계와 채용 등 잡다한 관리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고유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현장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전교조

## 교육지원청 정상화 = 학교업무 정상화

업무 이관 24대 지표



## 교육지원청 정상화 = 학교업무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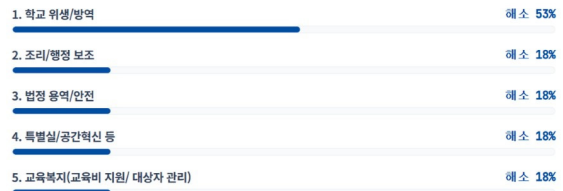
⚠ **미해결: 교사 부담 높은 5대 영역**

B+ 중심



⊙ **우수: 교사 업무 배제 성공 5대 영역**

A+C 위주



## 교육지원청 정상화 = 학교업무 정상화

1. 상급 기관으로의 '완전한 이관'
2.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학교 지원'의 법적 책무화
3.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업무 이관 TF팀' 구성의 필수성

## 해외 사례 그리고 일본

1. 영국의 '2020 교사의 급여 및 조건'
2. 프랑스 교육법
3. 미국 공립교사의 핵심 의무
4. 캐나다 교사협회 지침
5. 독일 주 교육부 규정

<일본의 교원 이탈 사태와 대책>

## 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한 5가지 정책 대안

1. '업무 영향 평가제' 및 '총량 관리제' 도입.
2. 시도교육청 단위 '표준 업무 분장 기준표' 법제화
3. 실효성 없는 정책을 폐지하는 '업무 일몰제' 시행
4. 교육 현장의 선도적인 '행정 자동화(AI)' 적용
5. 수업 집중도 향상을 위한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검토

토론  
06

## 교원의 교육활동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최종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2025년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034건으로 조사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모두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보다 훨씬 많은 사안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 4,034건 중 416건은 학부모에 의한 사안이다. 관련 법령 개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sup>1)</sup>하는 등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은 심각할 정도로 위축받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직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권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현직 교사의 이야기다. 이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잘 대변해 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과제로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선정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전문가 협의 및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4대 정책 중 교육활동보호 법령 정비 제안(2025.7.2.)

교육감협의회는 새정부 출범 직후인 2025.7.2.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4대 교육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한 바 있다. 그중 세 번째 과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이며, 그 세부과제로 교원정원 확보와 교권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교권 침해 사례 증가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고통, 조기 퇴직 및 교직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장치의 실효성 부족으로 교사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현장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새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와 행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교원 지위법」 개정 직후인 2023.9.~2025.2.(17개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065건(월평균 약 63건)이 발생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강화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적 사항 추가 및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외조항 신설: 정당한 학교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 제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건 송치시 사법경찰관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 미송치 가능
3.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 의결(2026.3.26.)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2026. 3월 총회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에 대한 안건을 전원 동의로 가결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였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정서적 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정당한 생활지도 등 제외’하는 조항이 개정 발의되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나, 현재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제안건에 대해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회신에서 교육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법무부에서는 신중검토의 의견으로 회신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안 내용
  - 특례 조항 개정 및 추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①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 처리
    - ② 교육감 의견에 대해 교육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사건 처리에 실질적 반영
  - 교육감 의견과 달리 입건하거나 송치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통보(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제안)

## □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가칭)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제안(2026.6.15.)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중요한 몇 가지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핵심내용은 교육부가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83개로, 작년보다 확대·운영(2025년 55개→2026년 83개)되고는 있지만, 많은 센터에서 피해교원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1명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앙지원센터 설치 제안은 현재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국가 차원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 및 법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가칭)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핵심 역할
  - 법령 및 제도 개선 지원, 전국 공통의 기준 및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및 네트워킹, 중대사안에 대한 직접적 지원
  - 사전 예방사업 및 교육공동체 상호존중교육 전개
  - 정밀 실태조사 및 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 관리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제29조)
  - 교육부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명시
  -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지역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 추가
    -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질적 보호기능 및 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건강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실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회복되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토론  
07

## 모든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교육활동 보호 -교원 전문성 존중에서 공교육 신뢰 회복까지-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와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학생의 배움이 지켜질 때 학부모도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반대편에 서서 권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기본 조건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앞선 두 발제도 이 점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기초 발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법·제도 정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육환경 개선, 전문성 신장, 소통과 신뢰 문화 조성이 함께 가야 함을 짚어 주었고, 현황 보고는 교권을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학부모의 신뢰, 학교와 교육행정의 지원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교육적 권위’의 문제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두 발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관점을 더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교실에 함께 앉아 배우고 있는 다수의 학생과, 아이를 교실로 보낸 대다수의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이들은 교육활동 보호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은 학교교육이 안정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여러 토론자께서 교사의 어려움과 제도적 과제,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와 소통을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에, 저는 이 다수의 학생과 평범한 학부모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사만이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서 배울 권리를 함께 빼앗기고 있는 다수의 학생과 그 부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교사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교육적 권위로 작동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는 교사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교실의 다수 학생도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교육활동 침해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교사와 한 명의 학생, 교사와 한 명의 학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교사가 겪는 고통과 위축은 매우 크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실에는 스무 명이 훌쩍 넘는 학생이 함께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업 방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교사에 대한 모욕과 위협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교사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교실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실태조사에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폭행이나 모욕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방해'였고, 그 비율은 몇 해 사이 24.1%에서 32.4%로 높아졌습니다. 이 숫자는 오늘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는 개별 교사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넘어, 수업의 안정성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 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바라보는 틀 자체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때때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활동 보호는 권리의 양보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배움을 지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아이가 방해받지 않고 배움 권리를 지켜 달라는 다수 학부모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학부모에게 손해가 아니라, 대다수 학부모가 자녀의 안정적인 배움을 위해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드러난 민원보다 보이지 않는 이탈 속에서 더 깊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을 드러내는 방식은 흔히 '항의(voice)'와 '이탈(exit)'로 구분됩니다. 항의는 학교에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이고, 이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활동 침해를 대개 민원이나 신고처럼 눈에 보이는 '항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부모는 자기 아이의 교실에서 안정적인 수업과 배움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또 다른 부담이나 갈등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데이터가 '항의'만 기록하고 '이탈'은 놓친다는 점입니다. 민원과 신고는 건수로 집계되지만, 아무 말 없이 견디다 조용히 사교육으로, 때로는 전학이나 대안적 선택으로 옮겨 간 학생과 학부모의 이탈은 충분히 기록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를 향한 신뢰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안정적인 수업과 배움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교육이나 전학 등 다른 선택을 검토할 수 있는 가정은 대체로 일정한 자원과 여력을 가진 가정입니다. 반면 공교육 안에서 배움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들, 특히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선택지가 제한된 학생들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보호의 실패는 단순히 다수의 불편이 아니라, 학생의 배경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격차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 발제에서도 사교육 의존이 심화할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사교육이나 전학과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학교 안에서 안정적인 수업과 배움이 보장되는 것은 공교육 신뢰를 지키는 일이자, 학생의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기본 조건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특정한 일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인 배움을

보장받아야 하는 모든 학생, 특히 가정 배경이나 여건에 따라 다른 선택지가 제한된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내는 학부모와 조용히 이탈을 고민하는 학부모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의 배움은 같은 교실 다른 아이들의 배움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은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배움을 함께 지키겠다는 공통의 기준 위에서 함께 보장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학교와 책임 있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고 함께 지켜 가는 출발점입니다.

**셋째, 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교육적 권위 회복 위에서 보장됩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을 읽고 교실의 관계를 조정하며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바로 이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고 교육적 권위로 작동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권위는 법적 권한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책임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 학교의 조직적 지원,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교육적 권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전문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업을 설계·실행하며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 전문성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교실에서 이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상담, 학부모 소통, 갈등 조정, 위기행동 대응 역량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미 예비교사 양성과 현직 연수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수업·평가 전문성과 분리된 부가 역량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할 전문성으로 재구성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체계와 연결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앞선 발제와 여러 논의에서 아동학대 신고 부담, 민원의 기관 책임화, 법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교육활동 보호의 정당성을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적 권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더 넓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오직 교사의 권익 보호로만 설명하면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고, 그 판단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조건으로 설명하면,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반대편이 아니라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교원 전문성 지원과 학교·교육지원청 차원의 기관 책임화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조치가 아니라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부터 교육적 권위를 회복하며, 공교육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공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넷째,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추가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강조하는 것이, 추가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배제하자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업 참여, 관계 형성,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입니다.

정서·행동 위기, 발달적 어려움, 관계 갈등, 마음 건강 문제 등 학생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모두 문제행동으로만 보거나 교사 개인의 생활지도 부담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관리자, 상담교사, 행동 중재 전문가, 교육지원청,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팀 기반의 대응입니다.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학생 지원이 어려움을 장기간 방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그 학생의 성장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교실 안 다른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과 보호는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추가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어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배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학생 지원 체계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체계는 따로 가서는 안 되며, 둘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활동 보호의 성과지표를 학생·학부모 관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보호의 성과는 주로 침해 심의 건수, 보호조치 건수 등 교원 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만으로는 공식 사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부모의 신뢰 변화, 학생이 체감하는 수업의 안정성,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 정확하게 설계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관점의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체감하는 수업 안정성, 학급 내 학습권 보장 정도,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사교육 의존 증가나 전학 고려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실제로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학생은 안정적으로 배우고 있는가?”,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고 있는가?”, “교사는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지표 개발과 실태 파악은 정책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맡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학생을 위한 정책이고,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교사가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은 안정적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의 반대편에 서는 대신, ‘그 교실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배우는 것’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교사가 혼자 버티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탱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사의 교육활동도, 학생의 배움도,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토론  
08

## 사법화된 교실을 넘어 '교육 가능한 학교'로: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진단과 해법

김영식 (덕양중학교 교사, 국가교육위원회 前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 위원)

### 1. 무너진 신뢰와 '교육 불가능'의 현실

현재 학교는 단순히 '교육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넘어, '교육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 학교 폭력, 학생들과 교사들의 죽음,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무반응,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 법률과 소송으로 치닫는 사태와, 교육활동에 대한 무수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이 꺼려지는 등 교육 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되었다. 25년 11월 27일부터 6개월 간 운영된 특위는 짧은 운영 일정 때문에 많은 주제를 다루지는 못했다.<sup>1)</sup> 특위에서 논의된 상황 인식과 해결의 단초 마련 노력에 기초하되, 토론자의 생각을 개진해 보려고 한다.

### 2. 입시 경쟁과 생기부 기재가 불러온 '학교의 전장화(戰場化)'

지금의 학교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선, 지금과 같은 현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현재 문제는 입시 중심의 한국 교육의 병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답도 없는 입시 중심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다소 동떨어진 주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교육의 주요 주체들이 입시를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학교에 오는 이유가 입시 때문인 상황에서 사교육의 발달과 인터넷 강의의 출현이 학교의 교육적 권위를 약화시켜 온 것은 분명하다. 교육기본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가적 교육 목표와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우리 교육에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본질적 교육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싸움임은 분명하다.

입시 교육의 환경 속에서 지금과 같은 소송전이 난무하는 학교를 만든 것은 2011년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법)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학교 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처벌법의 무분별한

1) 토론문은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토론자의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적용이다. 2012년부터 적용된 학교폭력법은 학교를 누구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터로 만들었다. 법 개정의 필요는 분명 있었다.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으로 내몰린 피해 학생을 학교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학교폭력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절차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분명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처벌 강화의 수단으로 등장한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조치가 판도를 바꾸었다. 학생부 기록이 전과 기록처럼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보호자들은 학교의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던 교사들은 당황스러웠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에 회부해서 조치를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학생과 보호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의 꼬투리를 잡고, 교사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교사의 생활지도 자체를 문제 삼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학교가 개최한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일도 늘어났다. 교사와 학교의 교육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거부되는 상황이 폭풍처럼 학교를 쓸고 지나갔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교사는 샌드위치가 되었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내 자녀를 가해자 취급하느냐, 내 자녀만 잘못된 것이 맞느냐 부모들이 이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했던 학교폭력법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상황은 전혀 다른 사법적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법이 잘못된 것일까? 법에 대한 수용 과정이 문제였을까?

### 3. '기분상해법'이 된 아동학대 조항과 발언의 비대칭 현상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등장한 것은 2000년이다. 법 제정 당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할 필요성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문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학교 생활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일이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게 될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법무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긴(기소) 비율은 단 1.6% ~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신고가 교육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오히려 무분별한 '의심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기소로 넘어가지 않았으니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피해는 심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입건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제도 개선으로 자동 직위해제되는 관행은 없어졌지만,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사태는 여전히 교사에게 크나큰 정신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자신이 가르치는 일이 범죄로 몰리는 상황을 편안한 마음으로 견뎌낼 교사는 많지 않다. 교사들이 병가를 내고 교실을 비우기 시작했고, 갑자기 담임이 바뀐 교실의 학생들은 새로운 교사에 적응하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습 손실은 불가피하다.

더 심각한 것은 보복성 아동 학대 신고다.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로 지도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학부모들이 맞불식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교권침해

상담 건수의 45%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학생 지도 관련 상담이 125건, 이 중 신고 사례는 74건이었다. 교탁에서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했다고, ‘올해 한 잘못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다시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 1,870건 중 72%에 해당하는 1,352건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 교권 보호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또 한 가지 현재 상황 인식에서 중요한 지점은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무분별한 민원의 목소리가 학부모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는 학교가 소풍을 포기하고 동네 소아과가 진료실 문을 닫는 한국의 풍경에 대해 “단순한 ‘진상 민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의 비대칭이 공적 영역을 잠식하는 구조적 현상이며, 그 끝에서 가장 약한 시민들이 먼저 중요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침묵하는 다수들 속에서 격렬한 소수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오직 ‘내 자녀의 이익 보호’라는 이기주의에 매몰된 소수의 과잉된 목소리가 발언의 비대칭(asymmetry of voice)을 일으켜 공적 영역인 학교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과잉된 소수의 발언권 남용을 공적으로 제어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없다는 점이 현재의 학교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 4. 제안 ①: 교사 개인 분리와 '교육활동보호국'을 통한 민원 체계 일원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우선 급한 것은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활동 위협 상황 속에서 개인 교사가 개별 민원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다. 민원대응 절차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학교 현장에 시도되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개별 민원에 노출되어 있다. 마트에서 산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매장 직원을 찾아가지 않고 매장 고객 센터에 찾아가는 것은 관공서들도 이제 개별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민원은 기관이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별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방법을 알지 못해 요청하는 상담과 불만이 생겨서 제기하는 민원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상담은 별도의 요청 절차를 거쳐서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은 불시에 제기된다. 교사 개인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학급 소통 앱 등에서 문자 한 번 보내면 되는 일이다. 단순히 제도 개선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학교마다 만들라고 한 민원대응팀이다. 민원대응팀의 운영 주체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이 민원 대응의 책임을 맡고 있다. 학교가 민원 대응을 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원 대응팀을 만들라 하면서 민원 대응할 직원을 보내지는 않는 교육행정 때문이다.

둘째, 특히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민원을 해결할 절차와 전담팀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악성 민원인(Vexatious Complainant) 처리 방침을 갖고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 등에 정당한 민원 처리 절차를 악용하여 직원을 괴롭히거나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개인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단순히 불만이 많은 고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집요함”으로부터 조직의 자원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욕설과 위협, 모욕적인 언행, 충분히 조사되어 종결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재조사 요구, 공격적 태도, 비현실적 요구, 특정 직원 괴롭히거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의 민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즉각적인 답변 요구나 기관장과의 면담 고집, 방해 목적, 짧은 시간 내 수십 건의 이메일이나 전화 폭탄 등은 악성 민원으로 규정되어 비공식 경고-공식경고-제한조치 실행 등의 절차로 처리된다. 악성 민원인으로 지정되면 지정 방법으로만 연락하고 다른 연락 방식은 제한되며, 빈도가 제한되고, 무응답하기도 한다.

일본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다. 일명 ‘카스하라 방지법’이다. Customer Harassment(고객 괴롭힘)이라 일컬어지는 진상 고객에 대해서 기업의 의무 조치를 강화시켰다. 카스하라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상황별 직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게 한다. 상담 창구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사후 배려 조치를 시행하게 하고,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매뉴얼에 따라 악성 고객의 전화를 먼저 끊거나,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법 실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한다.

아직 학교는 특이 민원에 대한 명확한 대응절차가 교사들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다. 민원대응팀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일부 교육감들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약속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기도 한다.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오래전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학교에 제기되는 민원이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교권보호센터가 교권침해 사후에 사건 처리에 치중해 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학교에 제기되는 특이민원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응답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악성 민원인 처리방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이 반복성 및 집요함, 공격성, 비현실적 요구, 방해 목적, 정보 폭탄 등의 특이 민원 기준을 마련하고, 특이 민원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교육활동보호국이 개입해서 민원인을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민원대응 전담팀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민원 대응 체계를 교육청과 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여 교사 개인을 보호하고, 학교 소통은 학부모회 중심의 공식 창구로 정례화해야 한다. 소통은 공식 창구로 투명하게, 민원은 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5. 제안 ②: 대학 입시 반영 제도 재검토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질화

셋째,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전을 해결하려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조치 사항을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적 조치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록된 학생들이 무더기로 탈락한 것을 실제 목격한 지금, 최소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을까? 학생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학교폭력을 멈추게 될까? ‘참교육’이든, ‘더글로리’든 드라마에 등장하는 폭력 행위는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범죄다. 사법 기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심각한 범죄 형태의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입에 본인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별 생각없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친구와 다투고, 싸우고, 괴롭혔던 학생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학교 폭력은 더 은밀해지고 교묘해질 것이고, 적발될 경우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맞푼 등의 물귀신 작전을 펼칠 것이며, 소송에 소송을 더하며 어떻게든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제안이다.

교육부는 관계회복숙려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회복의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기까지 참고 참았던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화해와 용서를 권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떻게든 가해 관련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고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신고 접수가 되면 교육청 심의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고 전담조사관이 파견되기 전에 갈등조정가가 먼저 당사자를 만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갈등조정가를 만나는 것이 고정된 절차로 정해져 있다. 절차에 따라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난 이후에 대화모임인지 심의인지를 선택하게 할 경우 대화모임을 선택하는 비율이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인천 교육청의 시도가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관계회복숙려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화해중재라는 이름부터 바꾸고, 절차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관계회복숙려제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적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실제로 심각한 학교폭력도 일어나고 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문제는 초등학교 시절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 시기라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엄정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단순한 갈등과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두려워서 쉽게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또 사과하면 될 일을 보호자들이 물려서지 못하고 맞푼으로 가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다. 그 사이에 끼어버린 초등학생들 중 상당수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더 심각하다. 처음 학교라는 사회를 만난 학생들이 친구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중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는 이런 취지에서 초등학교 1,2학년부턴 먼저 학교폭력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교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처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조치가 다시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 속에서 논의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절차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6. 제안 ③: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와 수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넷째,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 규정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분상해법’이라 불릴 정도로 학생의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행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서 정서적 학대 안에 반복성, 지속성, 가혹성 등의 범주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 조치를 통해 단순 기분 상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처벌법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가 되는 순간 교사가 수사를 받고 경찰서를 출입해야 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다.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사만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 요구하기도 어렵다. 다만 교육권, 학습권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다가 경찰서에 출입하는 처지에 놓인 교사의 충격,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학습권 침해 현실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교육청 조사를 통해서 교육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수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가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수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7. 제안 ④ 소통과 신뢰의 회복을 위한 노력

여섯째, 그래도 소통과 신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를 개별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는 있다. 개인 교사와 학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녀 교육의 협력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학생 교육에 더 효과적이다. 학생은 가정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다 분명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精緻 있다. 부모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학교 안에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가 학부모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장, 교감이 된다. 교장이 학부모회와 학교의 비전과 교육철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활동의 최고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일곱째, 교사와 학생 존중, 학부모회와의 소통과 신뢰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소수의 괴물 고객이 다수의 학교를 망치지 못하도록 다수가 다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와 존중, 학생 중심의 교육 만들기를 통해 교육의 3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존중의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 8. 결론: 제도적 안전망과 공동체성 복원이 만드는 학교 본연의 가치

종합하자면, 현재 한국의 학교가 마주한 ‘교육 불가능’의 위기는 단순히 몇몇 악성 민원인의 일탈이 아니라, 입시 중심 교육의 한계 속에서 법 제도의 허점과 사법화 현상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결과이다. 처벌 강화와 대입 반영에 치중한 학교폭력법은 교실을 소송전의 전장으로 변질시켰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모호성은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범죄로 모는 무분별한 신고를 양산했다. 여기에 소수의 이기적이고 격렬한 목소리가 공적 영역인 학교를 잠식하는 ‘발언의 비대칭’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교 공동체의 주체 간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러한 불가능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적 신뢰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개별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과 해외 사례(영국의 악성 민원인 가이드라인, 일본의 카스하라 방지법)를 벤치마킹한 명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기부 기재와 대입 반영 제도를 교육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및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항에 반복성과 가혹성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 의견서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막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정비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학교 공동체의 ‘소통 구조 복원’에 있다. 학교장 중심의 공식 창구를 통해 학부모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학부모를 민원인이 아닌 자녀 교육의 진정한 협력자로 세워야 한다. 동시에 소수의 과잉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상호존중을 지지하는 다수의 건전한 목소리를 조직하는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학교는 사법 공간이 아닌 아이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본연의 교육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토론  
09

## 교육 공간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 1. 기조 발표에 대한 토론

#### 가.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유경훈 박사)에 대한 토론

발표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단순한 사건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학교 조직,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권을 '권위·권리·권한'의 다층적 개념으로 정식화한 점, 그리고 정책 변화를 '교사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으로의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해석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토론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 간의 괴리 문제이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민원과 신고에 대한 상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통계의 개선'이 곧 '현장 경험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정책 평가는 주로 사건 건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사의 심리적 위축이나 자기검열과 같은 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책 평가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기관 책임 강화' 정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정책 방향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교사가 민원 대응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제도의 설계와 실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이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더 나아가, 교사를 민원과 분리하는 구조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셋째, '권리 대립 프레임'을 넘어서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권리 충돌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발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교권 회복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처벌과 통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발표에서는 학생의 복합적 지원 요구와 현재의 지원체계 간 불일치를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ADHD, 정서·행동 문제 등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가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게 되고,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사 보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학생 지원 체계와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장덕호 교수)에 대한 토론

본 발표는 교권 침해 문제를 단순한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육체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교권을 '교사의 권리'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정의한 점은 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발표자의 체계적인 분석과 의미 있는 방향 제시에 경의를 표하며, 토론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는 교권 위기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학교폭력 처리의 준수법화 등은 모두 제도 설계의 문제이며, 이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사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사의 교육행위를 '위험 행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어적 교육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본 발표가 제시한 '세 권리의 충돌 구조'—교권, 학습권, 학부모의 양육권—는 현재 학교 현장의 갈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세 권리를 단순히 조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합적 구조'로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부모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제한하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수권형에서 교사수권형으로의 전환'이라는 제안은 본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 개혁 방향이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교사를 교육과정의 1차 해석자이자 전문직으로 재위치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전환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 평가, 연수 체계 전반의 정합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발표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정책 간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법·제도 개정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학교 단위의 지원 인력 확충,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교사 협력 구조 강화 등은 비교적 단기적 실행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책 추진의 단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발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문화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상호 신뢰의 회복은 제도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교육 주체 간 관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육, 그리고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정착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두 발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현 상황과 문제점을 매우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으며,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핵심을 잘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토론자는 두 발표와 분석과 개선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고려 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2.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의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맥락적이다(이명주, 2023; 한혜현, 2024). 여러 요인들 중에서 학교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훈태, 2026; 이선희 외, 2023; 조준오, 2022; 허은정, 2023). 본 토론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를 사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schooling)란 학교교육 문제를 교육적 판단과 전문적 해결보다 법률, 소송, 행정심판, 형사절차, 권리 구제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교육적 지도나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해결보다는 법률적 판단과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는 현상을 말한다(고전 외, 2022; 김훈태, 2026; 정선균, 2026). 이 개념은 단순히 소송이 증가하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이 법적 책임과 권리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 현장의 사법화는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육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학교는 공적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과거와 같이 교사의 권위만으로 교육활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법화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원리 자체를 법률의 논리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실천 활동인 반면, 사법은 위법 여부와 책임의 귀속을 판단하는 규범 체계라는 점에서 양자의 목적과 작동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이 지나치게 법률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 가. 문제 1: 교육의 본질과 목적의 왜곡

학교 현장 사법화가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교육은 학생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전제로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 함양, 잠재력 개발, 공동체성 형성을 통해 학생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나 사법화는 교육활동을 위법성과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교육적 판단은 학생의 발달 단계, 가정환경, 심리적 특성, 또래 관계, 학교문화 등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법률적 판단은 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책임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한 생활지도 행위라도 교육적으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교사는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교육활동은 학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행정 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교육이 법률의 하위 체계로 인식될수록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분쟁 관리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며, 이는 교육의 존재 이유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문제 2: 방어적 교육(Defensive Teaching)의 확산

사법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행동보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방어 진료(defensive medicine)와(신현호, 2024)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교육에서는 방어적 교육(defensive teach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방어적 교육이 확산되면 교사는 학생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체험학습 운영, 생활교육 등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려 한다(김도기 외, 2020; 한혜현, 2024).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기록남 남기는 방식이 증가하며, 문제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역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체험학습이나 야외활동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며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교실 중심의 안전한 활동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다. 문제 3: 학생 성장과 회복적 교육 기회의 상실

교육은 학생이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이를 성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박남기 외, 2023; 이돈희, 1983). 학교는 단순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처벌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화가 심화되면 학생 간 갈등이나 생활지도의 문제가 곧바로 법적 책임 문제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경우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 역시 관계 회복보다 사건 처리와 절차 이행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최근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practices)은 피해 회복, 관계 회복, 공동체 복원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김영숙, 김윤희, 2022). 그러나 법률 중심 접근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회복적 교육의 철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라. 문제 4: 교육공동체의 신뢰 붕괴

교육은 무엇보다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학생은 교사를 신뢰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신뢰할 때 교육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일정 부분 신뢰해야 협력적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화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계약적 관계로 변화시킨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학부모는 교육적 협력자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학교를 평가하며, 교사는 학부모를 교육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 민원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호 신뢰보다 증거 확보와 기록 관리가 중요해진다. 상담 내용은 교육적 지원보다 분쟁 예방을 위한 기록으로 남겨지고, 생활지도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대화보다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교육공동체의 관계가 법률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학교문화는 협력보다 갈등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 마. 문제 5: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재량권의 약화

학교 현장 사법화는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정바울, 2024). 전문직으로서 교사는 교육학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교육적 판단을 수행한다. 동일한 행동이라도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관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지도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은 본질적으로 전문적 재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법화가 심화될수록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보다 법률적 위험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게 되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라 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면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조문주, 2025).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의 핵심 요소인 자율성을 약화시킨다(정바울, 2024).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그 책임 아래 전문적 판단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이 세부적인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의해 과도하게 통제될 경우 교사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행정규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관료적 조직으로 변화할 위험이 있다.

학교 현장 사법화는 교권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상수, 2024).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교육권을 의미한다. 교사의 권위 역시 강압적 통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교육활동이 언제든지 민원이나 형사고소, 행정심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교육전문가라기보다 잠재적인 법적 책임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 교육관계는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대립적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위험으로 인식될 경우 교사는 생활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학생지도의 공백이 발생하며 학교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바. 종합: 교육 공간의 사법 공간화 - 교육의 상실화

학교 현장 사법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는 새로운 교육활동을 시도하기보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활동만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교육혁신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축시키며 학교 조직 전체를 위험 회피 중심의 관료적 문화로 재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 사법화는 단순히 교사의 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차원을 넘어 교육의 목적, 교사의 전문성, 학생의 성장, 교육공동체의 신뢰, 학교의 자율성 등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을 대립적인 가치로 이해하기보다,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향후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 3. 해결 방향은 무엇인가?

학교현장의 사법화는 학생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형성된 현상이다. 따라서 학교현장 사법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적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학교 역시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적 기관이며, 학생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다.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활동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법적 판단이 교육적 판단을 대체하거나 교육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 사법화의 해결은 법과 교육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법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균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법화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큰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교육적 판단 우선의 원칙이다. 이는 법을 배제하거나 법적 책임을 약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 우선적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법은 교육적 해결이 어렵거나 학생의 생명·신체·중대한 권리 침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교육현장에서 법은 교육을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last resort)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교육의 방향과도 부합한다. OECD(2019)는 미래 교육의 핵심을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정서적 역량, 협력, 창의성의 함양에 두고 있으며,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UNESCO(2021)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 존엄성과 평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성 함양으로 제시하면서, 교육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학교현장의 법적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가. 해결 방향 1: 교육적 해결 우선의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 번째 기본 원리는 교육적 해결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educational resolution first)이다. 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우선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법적 절차는 교육적 해결이 실패하거나 학생의 생명·신체·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법이 각각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 나. 해결 방향 2: 회복 중심의 갈등 해결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회복 중심의 갈등 해결 원칙(principle of restorative resolution)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갈등 해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변유경, 2024; 양은향, 2023). 그러나 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갈등 해결 역시 처벌보다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피해 회복, 책임 인정,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Zehr, 2002). 따라서 학교 갈등 해결체계는 응보적 접근보다 회복적 접근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 다. 해결 방향 3: 학교 중심 해결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중심 해결 원칙(principle of school-based resolution)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은 상당 부분 교육청, 경찰, 법원 등 외부기관으로 이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최선옥 외, 2018; 한혜현, 2024). 물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교육갈등까지 외부기관이 해결하는 구조는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청과 국가기관은 학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갈등을 교사와 학생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대체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과 역량이 있고 우리 아이들 또한 선생님, 친구와 함께 해결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자질을 길러나가야 한다. 학부모들도 중대하거나 치명적인 사안이 아닌 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를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 라. 해결 방향 4: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원칙(principle of preventive conflict management)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 갈등 해결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 절차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갈등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상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및 소통 역량 교육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마. 해결 방향 5: 교육공동체 참여의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참여의 원칙(principle of collaborative participation)을 학교 갈등 해결체계의 핵심 원리로 삼아야 한다. 학교 갈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갈등 해결 과정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전문상담교사, 교육청 등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참여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이 갈등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바. 해결 방향 6: 최소한의 사법 개입 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또한 최소한의 사법 개입 원칙(principle of minimum judicial intervention)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법의 적용을 받는 공적 기관이지만 모든 교육적 갈등을 법률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소송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 중대한 인권침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한정하고, 일반적인 생활지도와 학생 간 갈등은 학교 내 교육적 해결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 종합: 교육 공간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결국 학교 갈등 해결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거나 절차를 변경하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학교를 어떠한 공간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교육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를 법적 분쟁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볼 것인지,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로 볼 것인지는 갈등 해결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 갈등 해결 체계는 학생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존중하면서도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고, 회복적 정의와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를 사법 공간에서 교육 공간으로 되돌려 놓는 대전환을 이루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 참고문헌

- 김도기, 이정표, 권순형, 김제현, 김세영(2020).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에 관한 연구: 강원도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2), 499-526.
- 김영숙, 김윤희(2022).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6(2), 25-56.
- 고 전 외(2022).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훈태(2026). 교육의 사법화 연구-서이초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 서울: 슈타이너사상연구소.
- 정선균(2026). 행정법 강해. 서울: 필통북스.
- 최선옥 외(2018). 교권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165 - 190.
- 박남기 외(2023). 교육대학원 역할 재정립 및 발전 방안 연구. 진천 : 한국교육개발원.
- 변유경(2024). 교권 침해와 피해 회복에 대한 질적 메타종합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41(1), 243-272.
- 신현호(2024).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 양은향(2023).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127-144.
- 이돈희(1983). 교육철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명주(2023). 초등교사의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직무 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총, 44(3), 181-219.
- 이상수(2024). 「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 법제, 707, 143-173.
- 이선희, 신윤정, Wu Yifan, 정제영(2023). 코로나19 팬데믹과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 분석: Kingdon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40(1), 165-188.
- 정바울(2024). 교육의 사법화와 교직 문화: 교사공동체의 침식과 재생. 중등교육연구, 72(4), 529-547.
- 조문주(2025). 「학교폭력의 사법화 비판」. 법학논총, 37(3), 933-971.
- 조준오(2022). 유아교사의 교권침해 실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탐구. 인문사회21, 13(6), 2433-2448.
- 한혜현(2024). 교권 침해와 한국의 인간 대상화 현상: 감정 노동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한 포커싱 영성 훈련. 신학논단, 115, 357-395.
- 허은정(2023). 초·중등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40(3), 31~59.
- Biesta, Gert(2010). Good Education in an Age of Measurement: Ethics, Politics, Democracy. Routledge.
- Dewey, John(1916). Democracy and Education. Macmillan.
- Zehr, Howard(2002).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Paris: OECD
-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MEMO

MEMO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